2020

정책연구 2020-0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성과확대 방안

연구진 오병록 · 고연경

Jeonbuk Institute

think 전북연구원

정책연구 2020-0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성과확대 방안

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연 구 진

연 구 책 임　오 병 록 •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공 동 연 구　고 연 경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관리 코드 : 19JU1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 차 | Contents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 3
2. 연구의 목적 ·····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6
1. 연구의 내용 ····· 6
2. 연구의 방법 ····· 8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 13

제1절 이론 고찰 ····· 13
1. 사회적경제 개념과 특성 ····· 13
2. 도시재생 특성과 성과 ····· 24
3.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관계 ····· 28

제2절 정책동향 ····· 40
1. 도시재생 정책 ····· 40
2. 사회적경제 정책 ····· 44

제3절 선행연구 ····· 51

제4절 사례조사 ····· 57
1.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 57
2. 시사점 ····· 62

제5절 소결 ····· 63
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 63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한계 ····· 65
3.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 67

제3장 전북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여건 ····· 71

제1절 도시재생 여건 ····· 71
1. 도시재생 추진 현황 ····· 71
2. 도시재생 기반 ····· 74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 여건 ····· 77
1.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 77
2. 전북 여건 ····· 81
3. 지원 기반 ····· 92

제3절 소결 ····· 100
1. 도시재생 추진과 기반의 조성 ····· 100
2.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동 ····· 102
3. 기반 마련 및 사업 지원 ····· 104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 확대 방안 ····· 109

제1절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향 및 전략 ····· 109
1. SWOT 분석 ····· 109
2. 성과확대 전략 ····· 111
3. 성과확대 과제 ····· 113

제2절 전략별 정책 방안 ····· 115
1. 지원기반 마련 ····· 115
2. 지원사업 추진 ····· 121
3. 제도개선 제안 ····· 129

제5장 결 론 ····· 137

제1절 연구 종합 ····· 137

제2절 정책 제언 ····· 139

참고문헌 ····· 143

표목차 | Contents

〈표 2-1〉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담당영역 ····· 17
〈표 2-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18
〈표 2-3〉 도시재생 성과(도시재생 뉴딜) ····· 27
〈표 2-4〉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주요 사업내용(공간조성, 조직육성) ····· 30
〈표 2-5〉 저층주거지 5대 서비스 ····· 34
〈표 2-6〉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36
〈표 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 42
〈표 2-8〉 도시재생 신규제도 개요 ····· 44
〈표 2-9〉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 47
〈표 2-10〉 사회적경제 조직별 주요 지원정책 ····· 48
〈표 2-11〉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추진방향 및 내용 ····· 50
〈표 2-12〉 선행연구 ····· 56

〈표 3-1〉 전라북도 도시재생 추진 현황 ····· 73
〈표 3-2〉 도시재생 조례 현황 ····· 74
〈표 3-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 76
〈표 3-4〉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77
〈표 3-5〉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78
〈표 3-6〉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78
〈표 3-7〉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 ····· 79
〈표 3-8〉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2019.6) ····· 79
〈표 3-9〉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 80
〈표 3-10〉 지역별 마을기업 현황(2019.6월) ····· 80
〈표 3-11〉 사업유형별 마을기업 현황 ····· 81
〈표 3-12〉 사회서비스분야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82
〈표 3-13〉 업종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82
〈표 3-14〉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83

〈표 3-15〉 지역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84
〈표 3-16〉 인증연도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 85
〈표 3-17〉 지역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월) ····· 86
〈표 3-18〉 지정연도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월) ····· 87
〈표 3-19〉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 88
〈표 3-20〉 지역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 89
〈표 3-21〉 업종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2019.6월 기준) ····· 90
〈표 3-22〉 지역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 91
〈표 3-23〉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현황 ····· 92
〈표 3-24〉 자치단체별 조례 현황(2019.8월 기준) ····· 93
〈표 3-25〉 자치단체별 전담부서 설치 현황(2019.6월 기준) ····· 94
〈표 3-26〉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 95
〈표 3-27〉 유형별 및 시군별 도시재생 추진 현황 ····· 100

〈표 4-1〉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안 ····· 114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분석틀 ····· 5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 9

〈그림 2-1〉 현대사회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 형태 ····· 15
〈그림 2-2〉 사회적 경제의 향후 확산 분야 ····· 15
〈그림 2-3〉 사회적기업 의의 ····· 19
〈그림 2-4〉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33
〈그림 2-5〉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 35
〈그림 2-6〉 도시재생 지원체계 ····· 41
〈그림 2-7〉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흐름 ····· 46
〈그림 2-8〉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추진방향 ····· 49
〈그림 2-9〉 성수동 사회적경제 조직 영향 ····· 52
〈그림 2-10〉 단계별 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53
〈그림 2-1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 ····· 67

〈그림 3-1〉 전북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71
〈그림 3-2〉 사회서비스분야별 전북 사회적기업 비율 현황 ····· 83
〈그림 3-3〉 지역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 84
〈그림 3-4〉 인증연도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 85
〈그림 3-5〉 지역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86
〈그림 3-6〉 지정연도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 87
〈그림 3-7〉 업종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 88
〈그림 3-8〉 지역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 89
〈그림 3-9〉 업종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 90
〈그림 3-10〉 지역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 91
〈그림 3-11〉 사업유형별 단위사업내용 비중 ····· 102

〈그림 4-1〉 SWOT분석 ····· 111
〈그림 4-2〉 SWOT분석과 전략에 따른 과제 ····· 113
〈그림 4-3〉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구성(안) ····· 116

1 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역의 환경개선의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임

- 도시재생은 당해 지역의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큰 변화 없이 기존 주민이 양호한 거주환경에서 지속적인 삶의 영위를 목적으로 함
- 따라서, 도시재생의 주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고, 도시재생은 주민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도시재생에서 주민의 참여는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시뿐만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로서 실현되어야 함
- 주민참여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

❍ 도시재생의 목표인 지역의 활력제고는 단 한 번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도시재생 역시 주민들의 활동이 지속되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경우,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3~5년간의 사업기간 동안만으로는 쇠퇴한 지역의 활성화와 활력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행정, 전문가 등의 참여와 지원으로 주민과 함께 사업이 진행되지만, 사업완료(국가재정 지원 종료) 후에는 도시재생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의 부재로 도시재생 활동마저 멈추게 됨
- 결국, 지역의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동을 이끌어나가는 주체는 주민 또는 주민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특히 주민공동체의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게 됨

❍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식변화로 현대사회의 필수적인 경제시스템의 하나로 적용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기존의 시장경제 시스템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대두됨
- 현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제도적 기틀을 갖추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금융 지원 및 인력 양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시재생분야 등에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주민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환경 마련 필요

- 대규모 철거 중심의 도시개발 및 도시정비가 노정시킨 지역사회의 해체와 시장경제에서의 경제성 우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최근의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음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는 사회에서 개별적으로 작동되는 것보다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성과를 더욱 제고시킬 수 있음
- 도시재생을 통해 형성된 주민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요구됨
-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역할이 아닌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지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이 나타나야 함
- 도시재생 활동의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조직을 법인화하여 지속적인 도시재생 주체의 자격을 부여하고, 일회성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전라북도의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지원사업 등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안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임

- 일회성의 도시쇠퇴 방지가 아니라 전북의 활력 제고를 위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민공동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조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도시재생사업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 확대 유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 도시재생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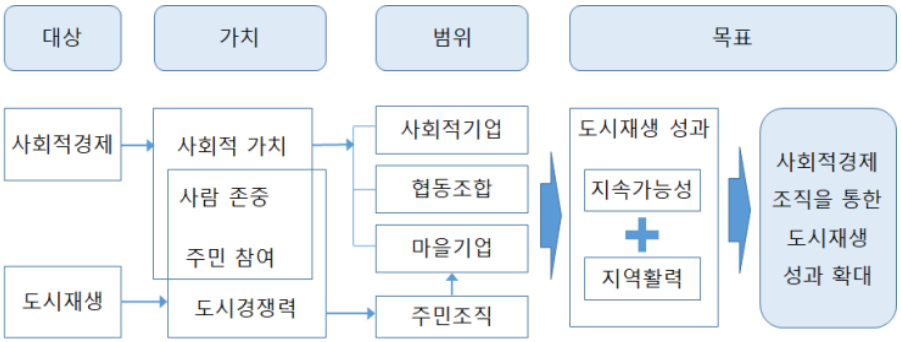

〈그림 1-1〉 분석틀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고찰

❍ 도시재생의 목표와 방향 검토

- 도시재생의 목표는 쇠퇴한 지역의 환경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활력 제고임
-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및 주민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함
- 주민과 주민공동체의 참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역의 쇠퇴방지와 활력 유지를 위해 지속되어야 함

❍ 기존 도시재생 추진상의 문제 고찰

- 주민참여의 한계 : 도시재생에서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발전방향과 사업내용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참여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도시재생 활동이 평일 일과시간에 이루어지고 쇠퇴지역의 높은 고령인구 비율 등의 이유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음
- 사업완료 후 지속성의 한계 :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 및 공공의 지원과 재정투입이 종료된 후에는 도시재생 활동도 동시에 중단되는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음

❍ 사회적경제 개념과 실태 분석

- 사회적경제 개념 검토 : 사회적경제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활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장 실패와 국가역할의 한계로 인해 시민들에 의한 사회적인 유대 및 연대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음
- 학문적, 경제적, 법률적,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과 특성을 검토하여 도시재생에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의미와 가치를 검토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 검토

- 사회적경제 활동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범위와 역할
-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특성, 담당해야 역할 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관계 검토

- 도시재생 추진의 문제점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 도시재생 추진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효과
-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한 성과 확대 가능성

○ 정책동향 검토

- 도시재생 정책의 흐름, 도시재생 사업 내용, 도시재생 지원 확대 등
-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지원 및 법제화 동향 등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 사례 조사

○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 사례

-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내용과 실태 등
-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에 따른 성과

○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에 관한 시사점

-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의 과제

(3) 전라북도의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여건 분석

○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분야 및 사업내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및 지원 기반

○ 사회적경제 활동 현황

-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 실태
- 사회적경제 지원 기반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연계를 위한 과제

-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참여가 필요한 부문
-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와 활동 시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 유도를 위한 과제

(4)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유도와 성과 확대 방안

❍ 전라북도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방향과 전략

❍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

- 제도적 개선
- 행·재정적 지원
- 사회적경제 참여 지원사업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과 관련한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과 실태 파악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과의 관계 검토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동향 검토

❍ 사례조사

- 도시재생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활동경험과 과정에 대한 면담
-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단점, 도시재생에서 역할, 애로사항 등

❍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관련 실무자 자문

- 사회적경제 활동과 도시재생사업에 참여의 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
-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한 사회적경제 실무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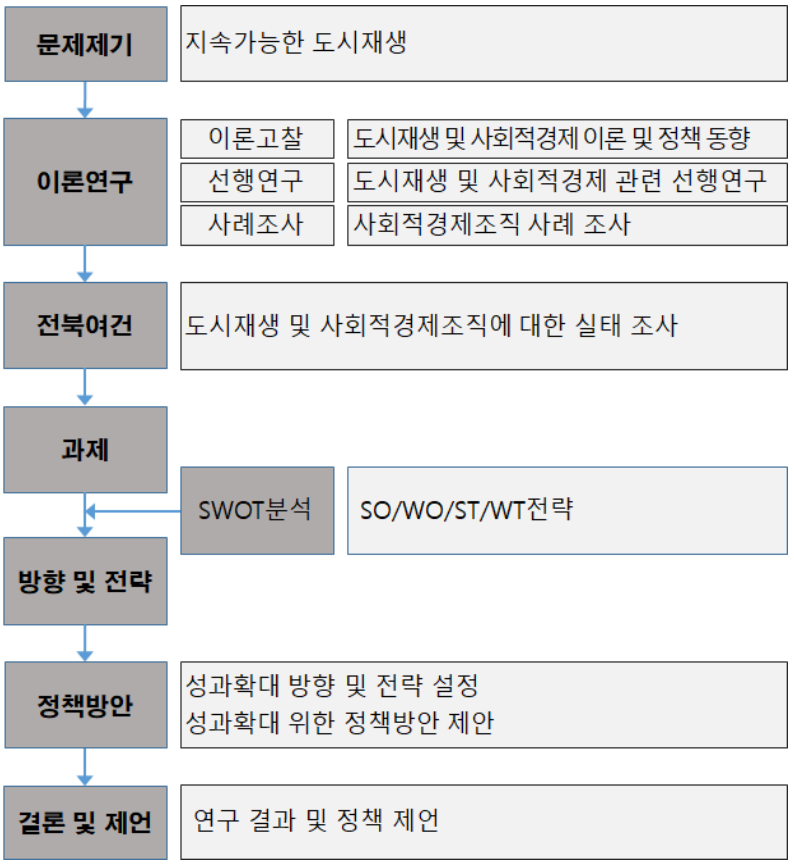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Jeonbuk Institute

1. 이론 고찰
2. 정책동향
3. 선행연구
4. 사례조사
5. 소결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이론 고찰

1. 사회적경제 개념과 특성

1) 사회적경제 개념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의 비판에서 출발함

-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시키는 반면, 시장경제 체제의 역할이 강조되는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완화하고자 사회적경제가 등장함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서 강조되는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의 초점을 두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 및 정의는 학자나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구성원 간의 연계를 공통적으로 강조함

- 사회적경제를, Walars는 효용성보다는 공정성에 가치를 두고 근본적으로 경제는 자연법칙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부를 분배하는, 사회적인 것으로 개념화 하였고, K. Polanyi는 물질적 재화의 가치를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 및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경제적 생산과 분배가 계층화된, 수직적이지 않고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확보되는 통합양식(신우진 외4, 2016; 황영모 외2, 2016)이라고 정의함

- 유럽연합(1989)은 사회적경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을 포함한다”고 정의함(박세훈 외4, 2014)

- OECD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 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재정적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을 강조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시민들 주도로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경제”로 정의(신우진 외4, 2016)함
- 패트릭 로퀫(Patrick Loquet, 2000)은 “인간을 모든 관심의 중심에 놓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지 자본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자본의 수익보다 일자리를 중시하고, 일자리를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연계를 중시하는 것”이라고 사회적경제를 정의함(신우진 외4, 2016)

❍ 사회적경제에 관한 개념은 “참여자와 효과를 널리 확대하면서 학술적 개념의 풍부한 내용과 법률적 개념의 정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사회적경제 정책으로 개념을 정의”(전주시, 2015)하는 추세임

❍ 최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 구성 조직 간의 공통점과 사회통합의 위기국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했던 혁신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황영모 외2, 2016)

❍ 현대의 사회적경제 영역은 기존의 영역보다 확대되고 있는데, 기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시장경제 사회의 경험을 통해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 건설이 한계임을 깨닫고,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선한 정신과 의지 등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사회적경제를 시장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자 보완하는 역할로서 주목되고 있음(대구경북연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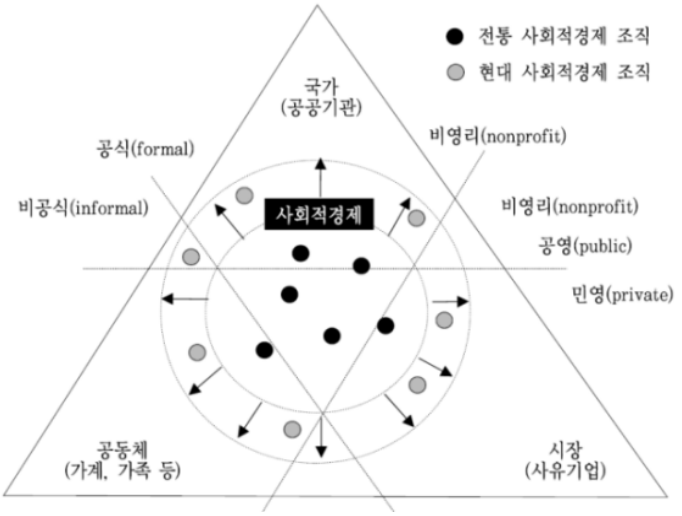

〈그림 2-1〉 현대사회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장 형태

출처 : 전주시(2015)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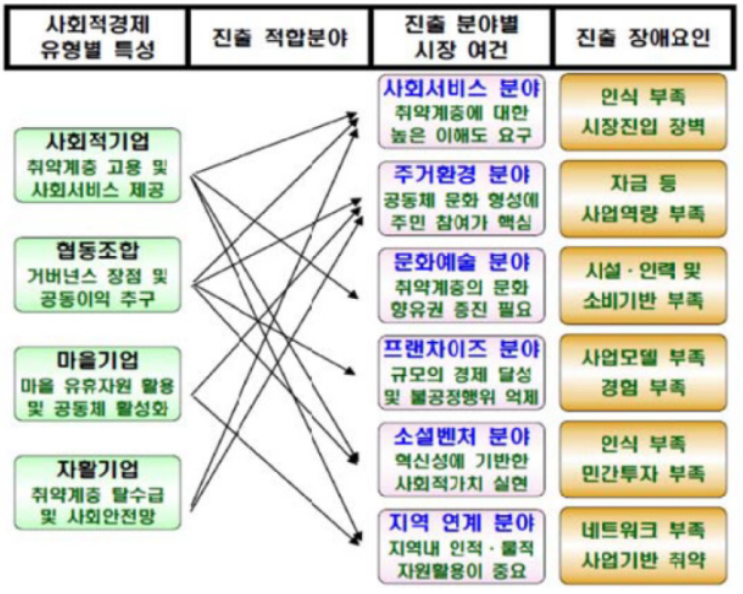

〈그림 2-2〉 사회적 경제의 향후 확산 분야

출처 : 성경륭(2018)

❍ 사회적경제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면서 여러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공공성이나 지역성을 강조하는 사회적가치와 주체로서의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정부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1]이고, “국가·시대별 정의는 다양하나,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시장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을 두고 있음

2)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법적인 틀 안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말함

❍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부처와 근거법 및 목표 등에 따라 상이함

- 〈표 2-1〉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 조직 외에도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도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경제 범위 안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음

1)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3쪽

〈표 2-1〉 중앙부처별 사회적경제 담당영역

부처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농림부
사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농어촌 공동체회사
정책 목표	탈빈곤	고용창출	고용창출	(고용창출) +소득창출	고용창출 +소득창출
주 참여자	취약계층 중심	취약계층 중심	마을주민+일반	(취약계층) +조합원	농어촌주민 중심
목표	저소득층 탈빈곤, 취약계층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사업자, 직원 등 다중이해관계자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회적기업육성법	-	협동조합육성 기본법	농어촌 삶의 질 향상법 일부 개정
출발 시기	2000	2007	2011	2012	2011
지원 제도	有 -사업비(2~3년), -인건비(최대 1년) 지원 -우선구매 및 우선 위탁	有 -경영지원, 우선 구매 -세제지원, 일자리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시설비 지원	有 -사업비 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네트워크 구축	有 -우선구매	有 -사업비(2년) 지원 -기획, 마케팅, 홍보 등

주 : 사회적경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여기에서는 최초로 대표발의한 유승민 의원의 기본법안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포함된 기업형태만 정리함

출처 : 신우진 외4(2016) 재인용

(1)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임

❍ 사회적기업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됨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최소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수익구조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향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임(박세훈 외, 2014)

〈표 2-2〉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구분	내용
조직형태	① 민법상 법인·조합, ② 상법상 회사, ③ 공익법인, ④ 비영리 민간단체, ⑤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업활동	- 최소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6개월 동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총액이 총 노무비의 30%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	-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목적 (전체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이 30%이상) - ③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목적 (해당조직의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이 각각 20% 이상)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목적 (취약계층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 -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의사결정 구조 등 기타	- 정관과 규약을 갖추고 있을 것. 특히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함

출처 : 세종시(2018) 54쪽

❍ 사회적기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함

- 취약계층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지역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며, 새로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충족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착한 소비문화 조성을 통해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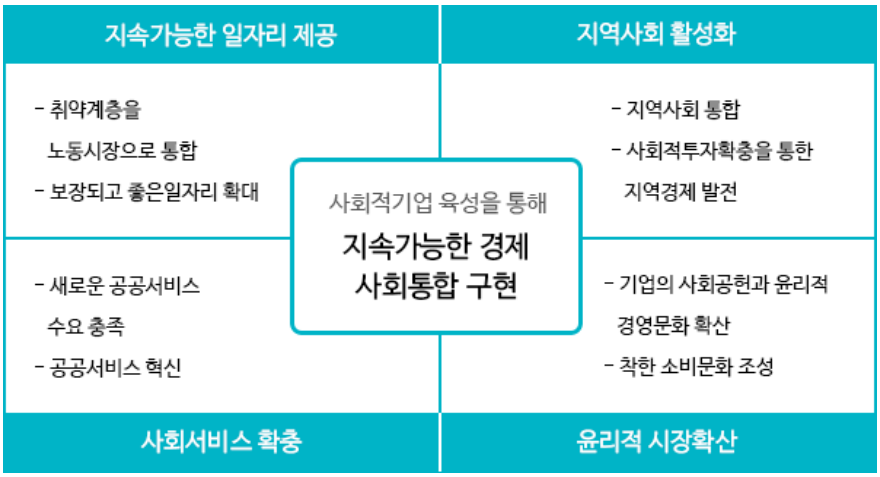

〈그림 2-3〉 사회적기업 의의

출처 :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ocial.kr) 참조

❍ 사회적기업은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라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박세훈 외, 2014)

- 일자리 제공형 : 일자리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고,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을 사업의 주 목적으로 하고,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의 비율 차지
-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한 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혼합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기업의 목적이어야 하고,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에서 결정

(2) 협동조합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관련 법에 정의되어 있음(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준수해야 하는 7개의 원칙이 있음[2)]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을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함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3) 마을기업

❍ 마을기업은 안전행정부가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도입(2010)하였다가 '마을기업 지원 사업'으로 변경(2011)한 사업의 대상임

- 도시재생법에서는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도시재생법 제2조 제1항 제9호)으로 정의됨

❍ 마을기업의 조직형태는 민법에 의한 법인, 상법에 의한 회사 등 조직형태로 법인인 자, 마을회, NPO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이고, 사회적기

2)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ocial.kr) 참조

업에 비해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큼[3]

○ 마을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확보해야 함[4]

- 기업성 :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 사업의 시장경쟁력, 지속가능성, 법인의 형태
-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 실현,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 출자자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 소속 회원뿐 아니라 지역 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 실현,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 특정 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 미만, 법인운영 시 행정자치부의 승인
- 지역성 :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추진,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70%가 지역주민)

(4) 자활기업[5]

○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박세훈 외, 2014)로서 도시 근로자의 일정비율을 수급자로 채용하여 경제적 자활(자립)을 돕는 기업임

○ 자활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음과 같음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3) 세종시(2018) 55쪽 참조

4)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ocial.kr) 참조

5)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ocial.kr) 참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지원
-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사무실책상, 의자 등 단순 비품 제외)

3) 사회적경제의 의의[6)]

(1) 고용 창출 및 고용안정과 유휴인력의 활용

○ 전산업의 취업유발 효과가 12.9명인데 반해 협동조합은 38.2명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일반 법인에 비해서 큼

-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이 이익을 공유하므로 일자리 자체가 양질을 확보함

○ 사회적경제 조직의 높은 기업생존율은 고용안정에 기여함

- 일반기업이 창업 3년 후의 기업생존율이 38.2%인데 반해,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3년에 91.8%, 마을기업은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87%, 사회적협동조합은 등록 후 3년 후에 99.2%로 높음

○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자가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소득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에 따라 사회적 유휴인력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2) 사회안전망으로서 소득양극화 해소와 공동체 복원

○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회 제공

○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보건, 문화 등 복지서비스가 다양한 공급주체를 통해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수행

---

6)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4쪽 참고

○ 무엇보다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체가 됨으로써 주민간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작동되면서 지역공동체문화 복원에 기여

4)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의 문제점[7)]

(1) 사회적 여건

○ 사회적경제의 초기 단계의 정책적 지원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술혁신이나 역량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미흡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인재 유입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경제에 의해 생산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선입견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

(2) 지원체계

○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협업 부족으로 사업조직별 및 유형별로 상이한 행정절차와 지원내용으로 비효율성 초래

○ 재정 및 세제지원에서 엄격한 기준의 적용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과 활동에 위축

○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중앙부처간이나 중앙-지자체간 및 중앙지원기관간 연계와 협력을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

○ 공공-민간간 상호협력하는 협업체계 미비

(3) 금융접근성

○ 금융조달 수요가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사회적금융 기반이 취약하여 체계적인 금융지원 미흡

○ 소액금융사업이나 중소기업정책자금 등 대부, 신용보증이나 지역신보 등 신용보증, 모태펀드 등 투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보증한도가 낮고

7)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9~11쪽 참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에 합당한 대출 및 보증기준 등의 미비로 실효성 저조

(4) 판로

- ❍ 공공조달은 최저가 낙찰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미흡
- ❍ 부족한 광고비, 취약한 영업망, 부족한 판로지원 등으로 소비자 접근성과 수요처 확보 제한적

(5) 인력

- ❍ 전문인력 양성이 부처별로 추진되고 창업·운영에 편중됨에 따라 대상별·분야별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 미비
- ❍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R&D 지원이 가능한 연계 프로그램 미흡

2. 도시재생 특성과 성과

1) 도시재생 특성

- ❍ 전세계적으로는 세계2차대전 이후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을 위해 많은 개발과 도시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낡고 노후한 건축물과 쇠퇴한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후 경제성장과 국토개발 및 도시화 속에서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옴
- ❍ 도시확장기의 도시개발은 혼잡하고 노후한 도심을 벗어난 도시 외곽에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거나 기성시가지의 주거지를 대규모로 철거하여 아파트 위주의 새로운 주거지로 급변시키는 방식으로 시행되었고, 물리적으로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급격한 도시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주민공동체 해체라는 비판을 받게 됨

❍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도시와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

❍ 시가지의 점진적인 변화와 더불어 기존 공동체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에서는 무엇보다도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됨

- 주민들의 참여는 마을기업과 같은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구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음

- 도시재생 경제조직은 공동체중심의 도시정비 방식을 통하여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붕괴된 사회적 자본을 회복하고, 지역의 자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가꿀 수 있도록 기능해야 함

❍ 지역사회(community) 개발과 관련된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시장섹터와 커뮤니티, 시민사회 조직체의 파트너십이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의 수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체가 이념과 연계기관의 기술적 전문성을 합치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면 도시재생은 본 목적대로의 성공을 실현할 수 있음(최조순 외2, 2011)

-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사례를 살펴보면, 제3섹터(third sector)가 도시재생사업의 파트너십 주체로서 참여하는 일본의 형태는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만들기 회사(TMO: 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유한책임사업조합(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합동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으로 유형화되고, 영국의 경우에는 지역전략파트너십(Local Strategic Partnership),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 지역사회 개발트러스트(Community Development Trust)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CDCs(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의 참여가 대표적임(최조순 외2, 2011)

2) 도시재생 성과[8)]

❍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재생을 통해 2017년~2019년 동안 총 266개 사업지구에서 총 3천여 개의 단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임

- 2019년 말 현재, 266개 사업지구 중 92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이 착수되었고, 추진 중인 도시재생 단위사업 중 46개 사업이 준공되는 성과를 가져옴

❍ 주민들의 도시재생 역량강화와 참여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 주민과 상인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고, 도시재생 협치포럼 등을 운영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7년 97곳에서 2019년 330곳으로 확대설치 되었고, 도시재생대학도 2017년 33곳에서 2019년에는 150곳으로 증가하여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155건의 소규모 재생사업과 62개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음

❍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일자리 만들기 성과도 창출함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관리 협동조합 등 지역의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함
- 총 95개의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마을관리를 위한 협동조합도 4개가 설립됨
- 청년의 도시재생 참여를 위해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실전형 창업대회를 통해 혁신스타 12개 팀을 선정하여 육성 중임

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26.) 참고

〈표 2-3〉 도시재생 성과(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 뉴딜 목표	분류	주요 사업내용
주거복지 실현	공공지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안전우려 건축물 재건축 사업,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민간 자율 주거재생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단독·다가구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공공 리모델링 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기능복합형 공공임대주택,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생활 인프라 개선	소방도로 개설·확충·정비, 공공주도 또는 민간주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국·공유재산 활용 복합주차장 건설, 공원·녹지, 어린이놀이터, 공공화장실, 무인택배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생활악취 방지, 골목길 정비
도시경쟁력 향상	안전·환경	친환경 에너지 재생사업, 주민 참여형 녹화,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폐·공가 등 방치건축물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회 통합	지역역량강화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을활동가 육성·지원,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육성, 주민공모사업, 마을축제 기획·운영, 마을미디어
	공동체 공간 조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운영, 공동체 공간 활용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동작업장, 셰어오피스, 공영 상가,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공동 텃밭
일자리 창출	상업기능 활성화	재래시장활용 원도심 재생사업,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소도시 및 쇠퇴 구도심 등 정비사업,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 지방거점 개발, 지방 소도시 중심도로변 재생사업
	산업기능 활성화	복합 지식산업센터 조성사업, 역세권 공유지 활용사업, 저밀 공용청사 복합사업, 국·공유지 개발사업
	문화기능 활성화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사업, 복합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타운 조성, 폐역사·폐교 등 기능상실 공간 활용사업

자료 : 국토교통부(2017)

3) 도시재생 성과확대의 개념

❍ 도시재생뉴딜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의 성과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의 목표를 달성하여 쇠

퇴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 도시재생뉴딜의 목표를 기준으로 도시재생의 성과는 주택의 정비, 임대주택 공급,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 지역역량 강화, 산업·상업·문화기능의 활성화이고, 최종적으로는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 제고라고 볼 수 있음
- ❍ 일회성의 한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기반과 틀이 구축되고 체계가 갖추어짐으로서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유지되는 것을 성과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 본 연구에서의 도시재생 성과는 주민공동체의 노력으로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하고, 도시재생의 성과확대는 주민공동체의 활동과 도시재생의 노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함

3.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관계

(1) 도시재생의 한계

- ❍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내용의 구성과 사업기간에 제한이 있음
  -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재정 지원의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원규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는 부담감 존재
  - 따라서, 사업기간 안에서 완료가 가능한 환경정비와 시설물 조성 등 물리적 특성의 사업비중이 높음
  - 공모사업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상당히 갖춰진 지역을 선정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 중에 충분한 시간속에서 합의와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사업유형에 적합한 단위사업으로 구성해야 하므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구성에 제약이 따름
- ❍ 이론 위주의 단편적인 역량강화 교육으로는 도시화 과정에서 약화된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주민공동체의 육성과 활성화는 도시재생의 주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주로 통장이나 이장, 노인회, 부녀회, 상인협의회 등에서 활동 중인 주민들이 그대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주민의 의사 도출에 한계가 있음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교육 등의 사업들은 주민공동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된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이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낮아 여전히 개발방식의 환경개선에 치중함

- 도시재생이 자생적인 주민활동으로 촉발된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민과 지역의 저변에서 기틀이 갖춰지지 않았으므로 점진적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반이 미약함
- 행정적·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지자체 행정부문이나 도시재생 추진 주체인 주민들은 여전히 지역의 환경개선과 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발굴되어짐
-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 조성하는 것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 시회통합과 주민공동체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들은 이론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이 중심이 되면서 실질적인 도시재생 활동주체 육성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공동공간의 운영·관리의 주체를 만들어내지 못함

- 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는 '행사'로서의 성격과 단순 참여를 위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실천적인 도시재생 주체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구성하고 진행되어야 함
- 〈표 2-4〉와 같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서의 단위사업을 보면, 주민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공동체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민공동이용 주차장, 공동텃밭, 상생상가 등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주로 작성되어 있음
- 공동텃밭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작물재배와 원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텃밭에서 생산된 작물을 활용한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하고 식당운

영을 위한 사업체 조직과 운영을 위한 교육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함

-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할 조직을 교육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관리회사나 마을기업 등에 대한 사업내용으로 담고는 있으나 단편적인 주민교육과 선언적인 조직 육성에 한계점을 나타냄

❍ 시간과 비용에 기한과 한도가 있는 국가지원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추진이 필요함

-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하는 시설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지 매입, 건물 리모델링·신축 등은 관 주도로 이뤄지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유지관리는 이후 주민들의 책임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초기 운영예산 지원이 끝나면 주민들 스스로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 활동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 이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환경과 조경 www.lak.co.kr/m/news/view.php?id=2167)

〈표 2-4〉 도시재생 사업대상지 주요 사업내용(공간조성, 조직육성)

연도	사업지	구분	사업명(사업내용)	용도
'17	도시재생사업 A 지역	공간조성	미래유산건축 리모델링	예술 공방
			미래유산상가 리모델링	공방 및 챌린지샵
			공공임대 시범상가 조성	예술 공방
			창업지원 희망의 등대 조성사업	사회적경제 안테나샵
			청년작가 창작 레지던시 플라자 조성사업	공방, 창작 레지던시, 창작교육
			행복플러스센터 조성사업	마을공동체 복합거점
		조직육성	주민역량강화 특성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교육
	도시재생사업 B 지역	공간조성	공동이용시설 신축	공동활동 공간, 마을카페, 구판장 등
			공공리모델링 임대, 매입임대	고령자와 산단 근로자 위하여 임대주택 매입 및 건설
			공동텃밭	공동텃밭
		조직육성	공동체역량강화	역량강화 교육 및 공동체 프로그램 추진
	도시재생사업 C	공간조성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커뮤니티 공간, 임시거주 공간
			로컬농업마을기업 지원사업_농가레스토랑 조성	주차장, 농가레스토랑 및 체험시설

연도	사업지	구분	사업명(사업내용)	용도
	지역		어르신 놀이 마당 조성	어르신 놀이마당, 어르신 놀이 프로그램 운영
		조직 육성	글로벌마을기업 지원사업	아시안 마켓 주민공모사업, 아시안마켓 입주자 창업컨설팅
			로컬농업마을기업 지원사업_ 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교육, 실습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18	도시 재생 사업 D 지역	공간 조성	공동텃밭	공동텃밭
			주민공동이용시설	다목적실, 작은도서관, 주민협의체 공간, 현장 지원센터, 마을관리기업, 고령자 공간
			주차장	주차장
		조직 육성	주민역량강화 교육	마을관리회사 설립(장기)
			마을공동체 육성	공동텃밭 운영, 마을기업 등 전환 위한 케어 후 공동이용시설 내 공간 주민 자율적 운영
	도시 재생 사업 E 지역	공간 조성	마을공용주차장, 어린이 체험형 텃밭	마을공용주차장, 어린이 체험형 텃밭
			뚝딱관리소 (미활용 건물 리모델링)	마을관리, 주차장·텃밭 운영·관리와 마을카페, 게스트하우스, 체험형 목공방 조성
			씨앗플랫폼(어울림 플랫폼)	창업 및 코워킹 공간, 공동육아, 노인돌봄, 집수리사무소
			지역홍보관	빈 점포 활용 남원 안내 및 홍보시설 활용
			아트 리모델링	빈 점포 및 노후점포 리모델링 상가 임대
		조직 육성	마을기업 육성사업	창업컨설팅 교육, 집수리지원
			건강특화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복지 환경 개선
	도시 재생 사업 F 지역	공간 조성	공공주차장 확충	토지소유자와 협약 체결하고, 자율운영 협약
			노후여인숙 기능전환(多房조성)	기존 여인숙을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고 운영
			성곽거리 명소화	테마전시관, 성곽재현, 고지도 벽화 설치 등
			세대통합 창업플랫폼 건축 (LH공사 공공임대상가 조성)	공공임대상가 조성, 커뮤니티비즈니스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희망의 등대 건립	집수리지원센터, 노인케어 및 노인복지공간 조성
			창작플랫폼 조성	전시장, 마을역사관, 예술인 창작 레지던시
			지원센터 건립(복합커뮤니티 공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회 소통공간,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 동아리방
		조직 육성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마을기업, 지역관리회사 설립, 교육, 활동지원
	도시 재생 사업 G 지역	공간 조성	스마트 마을 헬스건강센터 건립사업	스마트헬스건강센터, 스마트정보관, 건강증진실, 노인대학, 키즈카페, 마을공방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	공폐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동홈(공공임대주택) 조성	공동홈 건설

연도	사업지	구분	사업명(사업내용)	용도
		조직육성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주민카페 등 마을사업 운영
’19	도시재생사업 H 지역	공간조성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건설, 마을관리사무소, 코워킹 커뮤니티시설
			청소년 스터디카페 조성	청소년 동아리 어울림방, 커뮤니티 북카페 (북카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복합어울림센터 건립	작은체육관, 시니어 커뮤니티 공간, 공동육아 나눔터
		조직육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유지관리 및 운영 주체 육성을 위한 심화 교육/컨설팅 등
	도시재생사업 I 지역	공간조성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공유상가,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VR감옥 전시체험장, 스마트 인물 박물관
			한옥숙박 체험관 조성	한옥숙박 체험관 조성
			지역혁렵 신규상가 공급	기업연계 상생협력상가 조성, 민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정원마을 조성	마을정원 조성, 골목 정원 가꾸기,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빈집/빈건물 조성(빈집 철거 후 공동체 텃밭으로 활용)
		조직육성	거점시설 운영지원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동아리 및 창업 네트워크 운영지원
			지역특화자원 창업 지원	쌀가공식품 창업 지원, 수공예 공방 창업 지원, 농업벤처기업 창업 지원
			두레 공동체 육성	공동체 육성 프로그램,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지원, 시민자산화 실행 지원
			상부상조 거버넌스 운영	거버넌스 활동 지원, 시민활동가 육성/지원,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사업 J 지역	공간조성	커뮤니티공간 확보	주민복지공간, 옥외활동공간 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노후점포 리모델링 지원
			건축자산거점 조성	목공/염색 공유공방 조성, 목공/염색 창업교육 및 체험 운영
		조직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대학-맞춤형 전문가 교육(소득사업 발굴 및 운영 역량 학습)
	도시재생사업 K 지역	공간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공공임대주택, 희망상가, 마을공연장,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마을돌봄소, 맘카페, 마을밥집
			사회주택	임대주택 운영, 마을밥상 운영
			마을돌봄소 조성	리모델링 후 마을돌봄소 조성, 마을밥집 및 맘카페 조성
			마을사랑채 조성	마을사랑채 조성
			마을주차장 조성	마을주차장 조성

연도	사업지	구분	사업명(사업내용)	용도
		조직 육성	민간 자율주거재생 지원사업	주거복지지원센터 및 마을목수 운영, 마을 안전·경관 관련 집수리 지원
			마을공연장 운영	마을문화공동체 통한 운영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마을공동체 조성 및 운영,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방안

출처 : 도시재생 뉴딜 각 사업대상지 사업계획서(2017~2019 광역공모 선정지)

(2)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의 접목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관리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형성되어야 함(이석환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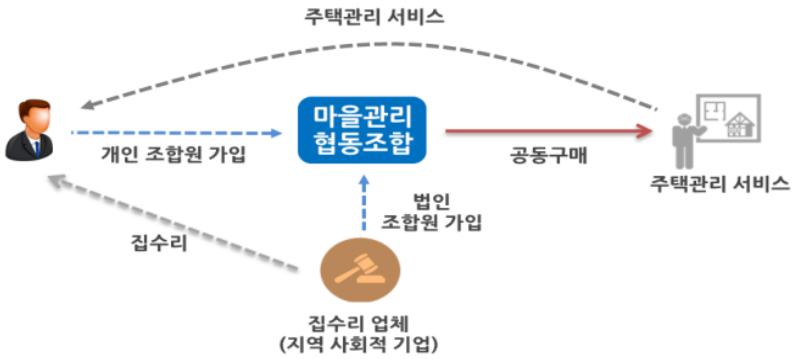

〈그림 2-4〉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18.7.26.),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주도적이고 조직적인 주민참여가 강조되면서 “복합적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사업에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는 정도의 주민협의체보다 주도적으로 사후관리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주목하고 있음”(신우진 외4 2016)

〈표 2-5〉 저층주거지 5대 서비스

서비스	유관기관	지원내용
주택관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가 고용한 주택관리사를 단독·다가구 등 저층 주거 관리를 위해 배치, 손해배상공제 제공
집수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 기반 집수리 사회적 기업(터새로이 사업자) 육성 및 지역 내 집수리 통합 발주
사회적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뉴딜사업지 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에게 임대관리 위탁
에너지 자립	산업자원부	자가용 태양광발전 설치 국비 지원(총사업비 50% 지원) 공모 시 마을관리 협동조합 가점 부여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발전 수익 사업 등에 대한 신재생설비 시공 기업 추천, 사업 컨소시움 구성 지원 등
마을상점	지자체	지자체가 기초생활인프라 등 공간조성 후 협동조합에게 무상임대하여, 운영·관리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18.7.26.),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초석을 다진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함

- 쇠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은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조직보다 더욱 여건이 불리할 수 있음
-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담보하면서도 도시재생의 일부로서 참여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절실함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 과정에서 조직된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제활동의 대상은 주로 지역주민이므로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민의 수요 해결을 목표로 두어야 함

- “주민의 욕구를 근린단위에서 미시적으로 발굴하고, 호혜와 나눔의 경제단위를 구축할 때 수요-공급-수익금 재투자 등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이 가능하고, 도시재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도 가능”(신우진 외4, 2016)함

- “마을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통해 ① 지역의 필요(욕구) 해소, ② 지역주민 대상 신뢰 구축(필요시 누구나 와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 ③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생산자/소비자/평가자로 참여 등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런 사회통합도 달성할 수 있을 것”(신우진 외4, 2016)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당해 지역의 문제해결 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주요 목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을 달성하는 수단(박세훈 외, 2014)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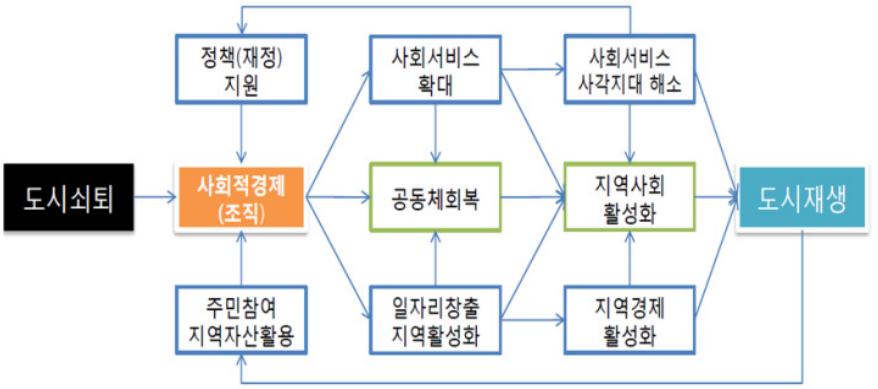

〈그림 2-5〉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의 역할

출처 : 이주원(2016) 12쪽

❍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이윤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 및 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며,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박세훈 외, 2014)

❍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을 도시재생사업 참여에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음

- 전북지역에는 전주, 군산, 완주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5곳이 지정됨

〈표 2-6〉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유형	소 재 지
제2018-01호	㈜공주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충남 공주
제2018-02호	진주새뜰마을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경남 진주
제2018-03호	지역상권활성화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나)	부산 사하
제2018-04호	㈜녹색친구들	기타형	서울 마포
제2018-05호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	기타형	서울 동작
제2018-06호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	지역사회공헌형(나)	경기 성남
제2018-07호	㈜유쾌한	기타형	서울 성동
제2018-08호	㈜쉐어하우스공명	기타형	광주 북구
제2018-09호	㈜도시와 사람	기타형	경기 안양
제2018-10호	사회적협동조합 경기안산지역자활센터	기타형	경기 안산
제2018-11호	주식회사인피루트	기타형	경기 시흥
제2018-12호	주식회사 고래실	지역사회공헌형(가)	충북 옥천
제2018-13호	㈜다해브러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순천
제2018-14호	㈜촌티서울	기타형	서울 종로
제2018-15호	㈜공무점	기타형	서울 마포
제2018-16호	(유)아름건축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북 군산
제2018-17호	㈜제주착한여행	기타형	제주 제주
제2018-18호	예술로뚝딱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나)	전북 전주
제2018-19호	씨제이인스트루먼트(주)	기타형	서울 성북
제2018-20호	㈜냅스터	기타형	서울 성북
제2018-21호	유한책임회사 더함	기타형	서울 은평
제2018-22호	㈜뉴미들클래스	기타형	울산 중구
제2018-23호	㈜백년건축	혼합형(일자리제공, 서비스제공)	울산 울주
제2018-24호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 공헌형(나)	충북 청주
제2018-25호	㈜윙윙	기타형	대전 유성
제2018-26호	민들레역사문화 연구소협동조합	기타형	충남 아산
제2018-27호	사이영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순천
제2018-28호	한국정원식물관리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순천
제2018-29호	주식회사 둥지아이티건설	일자리제공형	서울 강서
제2018-30호	주식회사 화도진건설	일자리제공형	인천 동구
제2018-31호	정우필 하우징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서울 강남
제2018-32호	주식회사 다원비엠에스	일자리제공형	경기 고양
제2018-33호	(사)지역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일자리제공형	경북 안동
제2018-34호	㈜오롯컴퍼니	지역사회공헌형(다)	서울 동작
제2018-35호	주식회사 칸개발	지역사회공헌형(나)	전남 목포
제2018-36호	협동조합고쳐드림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순천
제2018-37호	주식회사 고마워요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나주
제2018-38호	㈜리마크프레스	지역사회공헌형(나)	서울 중구
제2018-39호	주식회사 더몽	지역사회공헌형(나)	서울 성동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유형	소 재 지
제2018-40호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	지역사회공헌형(나)	서울 종로
제2018-41호	㈜옐로우브릿지	혼합형	울산 남구
제2018-42호	㈜더그림페인팅	기타형	서울 용산
제2018-43호	주식회사 마커스컴퍼니	기타형	서울 성북
제2018-44호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 주식회사	기타형	대전 서구
제2018-45호	협동조합큰바위얼굴	기타형	서울 동작
제2018-46호	주식회사 지문도시건축	기타형	서울 영등포
제2018-47호	주식회사 어라운디	기타형	서울 성동
제2018-48호	주식회사 캔디뮤지컬컴퍼니	기타형	서울 강동
제2018-49호	쉐어하우스아지트 유한회사	기타형	전북 완주
제2018-50호	주식회사 쏘시오리빙	기타형	경기 성남
제2018-51호	㈜아트뮤직프로젝트	기타형	경기 부천
제2018-52호	주식회사 더나비	기타형	대구 달서
제2019-1호	오래오래 협동조합	일자리제공형	서울 강동
제2019-2호	㈜다온홈리페어	일자리제공형	대전 대덕
제2019-3호	주식회사 니오드림	일자리제공형	경남 양산
제2019-4호	주식회사 더하랑	일자리제공형	부산 사하
제2019-5호	주식회사 드림하우징	일자리제공형	경기 수원
제2019-6호	주식회사 우리건축	일자리제공형	경북 포항
제2019-7호	주식회사 청양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충남 청양
제2019-8호	주안건설 주식회사	일자리제공형	서울 동대문
제2019-9호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지역사회공헌형	충남 공주
제2019-10호	주식회사 공정여행통영뚜벅투어	지역사회공헌형(가)	경남 통영
제2019-11호	주식회사 바름산업	지역사회공헌형(가)	전남 순천
제2019-12호	주식회사 설성하우징	지역사회공헌형	충북 음성
제2019-13호	주식회사 증평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공헌형(가)	충북 증평
제2019-14호	㈜한아름건축	지역사회공헌형(가)	충북 영동
제2019-15호	다온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울산 동구
제2019-16호	우리가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나)	부산 영도
제2019-17호	충남주거복지 사회협동조합 가원	지역사회공헌형(나)	충남 예산
제2019-18호	수리수리협동조합	혼합형	강원 삼척
제2019-19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마포
제2019-20호	사단법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창의혁신형	서울 용산
제2019-21호	유니버설하우징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영등포
제2019-22호	주식회사 서울소셜스탠다드	창의혁신형	서울 마포
제2019-23호	주식회사 어반트랜스포머	창의혁신형	서울 중구
제2019-24호	주식회사 휴식	창의혁신형	서울 중랑
제2019-25호	협동조합 내일만사	창의혁신형	서울 강동
제2019-26호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창의혁신형	부산 금정
제2019-27호	로컬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강북
제2019-28호	모두들청년 주거협동조합	창의혁신형	경기 부천
제2019-29호	발전소책방5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경기 파주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유형	소 재 지
제2019-30호	어반업사이클링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동대문
제2019-31호	정우플로우 주식회사	창의혁신형	부산 영도
제2019-32호	㈜더청연	창의혁신형	부산 해운대
제2019-33호	㈜메이크앤무브	창의혁신형	서울 금천
제2019-34호	주시회사 알고씽(algo-thing Corp.)	창의혁신형	경기 성남
제2019-35호	주식회사 공유를위한창조	창의혁신형	부산 동구
제2019-36호	주식회사 더나누기	창의혁신형	경기 안양
제2019-37호	주식회사 상상여행	창의혁신형	인천 남구
제2019-38호	주식회사 위라이드	창의혁신형	서울 마포
제2019-39호	주식회사 인간과공간	창의혁신형	경북 구미
제2019-40호	주식회사 지방	창의혁신형	전북 군산
제2019-41호	청춘발산협동조합	창의혁신형	광주 서구
제2019-42호	협동조합 수공예협회	창의혁신형	전북 군산
제2019-43호	희망둥지협동조합	창의혁신형	경기 수원
제2019-44호	인문학목공소 협동조합	지역사회공헌형(가)	경북 칠곡
제2019-45호	협동조합 마루인테리어	일자리제공형	대전 중구
제2019-46호	주식회사 터칭스튜디오	사회서비스제공형	인천 미추홀
제2019-47호	주식회사 동트는집	일자리제공형	경남 남해
제2019-48호	주식회사 논산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충남 논산
제2019-49호	주식회사 심바이오리빙텍	창의혁신형	서울 서대문
제2019-50호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은평
제2019-51호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주식회사	창의혁신형	서울 영등포
제2019-52호	주식회사 어울리	창의혁신형	서울 관악
제2019-53호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주식회사	창의혁신형	서울 영등포
제2019-54호	생각실험 사회적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서울 강동
제2019-55호	주식회사 공공플랜	창의혁신형	부산 동구
제2019-56호	희망과나눔 도시재생협동조합	창의혁신형	경기 고양
제2019-57호	㈜ 툴아이피	창의혁신형	광주 북구
제2019-58호	열정거북 협동조합	창의혁신형	전남 목포
제2019-59호	주식회사 로컬랩커뮤니티	창의혁신형	서울 노원
제2019-60호	주식회사예천새움 주거복지센터	일자리제공형	경북 예천

자료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 765호, 제2018 - 1475호, 제2019 - 932호, 제2019 - 1794호

(3) 도시재생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지칭함

❍ 도시재생이 새뜰마을사업과 같이 상당한 취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재생의 정책대상이 취약계층은 아님

❍ 또한, 도시재생 분야 연구[9]에서 공통적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4)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한계[10]

❍ 사업 역량 부족

- 인력의 한계 : 소수의 상근직원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기 어려움
- 실무 역량과 경험의 부족 : 사회적경제 조직도 하나의 기업으로서 필요한 업무인 세무, 회계, 노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능력과 경험 부족

❍ 임원진의 역량

- 임원진 역량의 한계 존재 : 주민공동체에서 발전된 조직이므로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임원진은 사업 역량에서 한계가 있음

❍ 조합원 참여의 어려움

- 조합원 역시 주민들이므로 생업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과 참여, 조합원과의 정보교류 등 활발한 소통이 어려움

❍ 사회적경제 조직과 마을공동체 조직의 중간 성격

- CRC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마을공동체 조직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부담이 적지 않음

❍ 외부환경 문제 : 공공과의 신뢰 문제

- 공공시설 운영이나 기타 사업 위탁에서 어려움 발생 : 공공의 주민 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시설 위탁에 대한 선례가 없어 공공시설 수탁 실현에 어려움

❍ 외부환경 문제 : 미개척된 신규 사업영역

- 신규 사업영역 창출 필요 : 지역재생을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것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일임

---

9) 박세훈 외(2014), 신우진 외(2016), 이주원, 김륜희 외(2017) 등

10) 손경주(2019) 참조하였으므로, 특정 사례 중심의 한계일 수 있음

제2절 정책동향

1. 도시재생 정책

1) 도시재생 이전

- ❍ 도시화 과정 속에서 노후불량주택이라는 개념의 적용과 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기성시가지의 낡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라는 고층의 공동주택으로 재개발되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왜곡되고 도시조직은 변질되면서, 결국 오랜 시간 도시가 가지고 있던 모습과 가치를 상실하게 됨
- ❍ 무엇보다도 노후주택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재산증식이라는 잘못 계산된 기대로 인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였지만 추가되는 막대한 주거비용의 감당이 어려워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타지로 이주해 나가면서, 기존 주민공동체의 와해라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
-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도시정비의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많은 뉴타운지구 및 재개발사업구역이 지정해제되어 노후하고 불량한 주거지가 마땅한 정비수단 없이 방치되면서 더욱 쇠퇴하게 됨
- ❍ 이에, 새로운 정비방식이 요청되었고, 기존의 소규모로 민간에서 시행되었던 마을만들기를 발전시킨 도시재생이 추진되게 됨

2) 도시재생 근거 마련과 국가주도 도시재생

- ❍ 도시재생이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기 전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도시정비 방식인 도시재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전주와 창원에서 테스트베드 사업이 추진됨
- ❍ 본격적인 도시재생은 근거법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3)되면서 국가적 지원에 의해 추진됨
- ❍ 2014년에는 도시재생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13개 지역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으로 지정하여 국가지원에 의한 도시재생이 비로서 시작됨

❍ 2016년부터는 도시재생 일반지역을 33곳 선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주요 핵심사항이 되었고, 국가 주도의 사업추진의 지원체계가 강화됨

- 도시재생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성공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는 역함을 함으로써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연구원 및 부설 건축공간도시연구소가 도시재생지원지구로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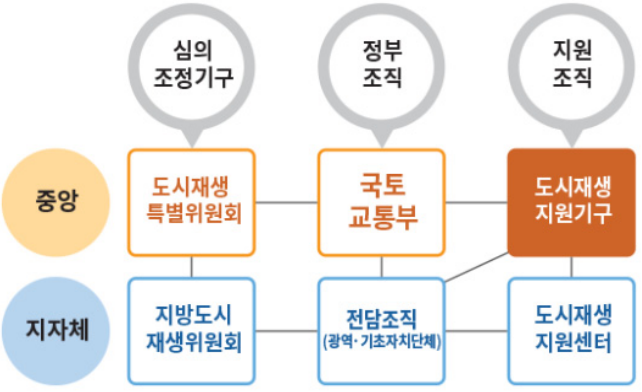

〈그림 2-6〉 도시재생 지원체계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3) 지역기반 도시재생 뉴딜

❍ 도시재생법에 의하여 국가지원으로 추진되던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의 소극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주도로 추진되면서 주민들은 끌려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반성으로부터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혁신을 비전으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으로 발전하여 추진됨

❍ 2017년부터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여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

능한 도시혁신을 비전으로 제시되었고, 국가의 지원도 대폭적으로 확대됨

❍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유도함

❍ 또한, 국가재정이 지원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의 일부를 광역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여 주민수요와 지역특성이 반영된 도시재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

〈표 2-7〉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법정 유형	-	근린재생형			도시경제기반형
기존 사업유형	(신규)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추진·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 수립	필요시 수립	수립 필요			
사업규모	소규모 주거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권장 면적규모(㎡)	5만 이하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50만 내외
대상지역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국비지원 한도/집행기간	50억원/3년	100억원/4년		150억원/5년	250억원/6년
기반시설 도입	주차장, 공도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편의시설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4) 도시재생 고도화

-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담긴 많은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각 단위사업은 도시재생법이 아닌 개별사업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부의 노후 건축물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법에 따른 지원이 불가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에 공기업의 참여와 투자에 제한이 존재
- ❍ 이러한 한계와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신규제도 도입하여 시행함(2019년)
- ❍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공기업이 지자체의 도시재생 추진 권한을 수탁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운영 관리하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게 됨
- ❍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활성화계획 수립 없이도 점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재정 및 기금의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음
- ❍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리츠 등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 없이도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지정과 인허가를 거쳐 지구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데, 사업부지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표 2-8〉 도시재생 신규제도 개요

구분	기존 뉴딜사업	총괄사업관리자	혁신지구	인정사업
방법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기업 거점사업을 통한 활성화계획 촉진 및 국비지원	도시재생 촉진 위한 지구단위 건설사업 (활성화계획 불요)	타법 시행 소규모사업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인정 및 국비지원 (활성화계획 불요)
절차	전략계획→ 활성화계획→타법에 따라 시행	전략계획→활성화계획→타법에 따라 시행	혁신지구계획→시행계획→시행	인정신청→인정 →타법에 따라 시행
대상지	전략계획수립지역 내 활성화지역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 활성화지역	쇠퇴지역 (추후 활성화계획 의무수립)	전략계획수립지역 내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부족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지 ×)

자료 : 국토교통부(2019) 도시재생 신규제도 설명회 자료

2. 사회적경제 정책[11)]

1) 제도적 흐름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제도의 발전단계는 광복 후 개발 독재기, 시장 사회기, 이식기, 확장기, 정비기로 구분하여 제시되고 있음

- '개발 독재기(1945~1979)'는 광복 후 1970년대까지로서 농협·수협·축협 등 정부의 자원동원 목적의 대형 관제 협동조합과 동시에 천주교 중심의 신협운동, 원주와 홍성의 협동운동 등 현장중심의 대안적 사회적경제 운동이 중요한 기반을 만듦
- '시장 사회기(1980~1997)'는 관제 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대에 기반한 소비협동조합이 등장하면서 확산하였고, 1990년대 중반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이 넓혀졌으며,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등의 새로운 요청에 직면하게 됨
- '이식기(1996~2006)'에는 외환위기 후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과 자활후견기관 모델이 등장하였고, 공공근로,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등을 통한 일자리의 제도화 및 사회서비스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이 제정됨

11) 황영모(2016), 이경호 외2(2017), 신우진 외492016) 참고

- ‘확장기(2007~2012)’에는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사업, 마을기업 등 정책연계 조직이 늘어났는데, 개념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제도적 동형화와 국가 주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됨
- ‘정비기(2013~현재)’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정책적 과정과 현장중심의 사회적경제 운동의 성과를 토대로 사회적경제의 목적과 가치를 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으로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

❍ 1997년까지 시장경제에서 정부주도 협동조합과 빈민운동을 통한 사회적 경제 태동을 위한 ‘잠복기’를 거쳐, 정부 주도로 양적인 팽창을 가져온 1997~2005년에는 ‘발아기’, ‘양적팽창기’, ‘전환모색기’로 전개되었고, 2006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등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생적 육성을 모색하는 ‘질적 전환기’에 이르는 흐름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음

❍ 사회적경제 영역별 법령으로는 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그 밖에 자활기업을 정의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을기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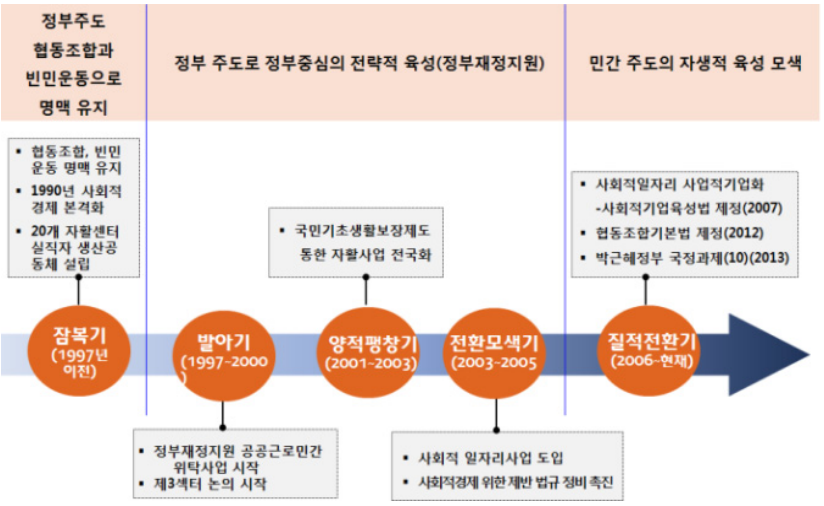

〈그림 2-7〉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흐름

출처 : 신우진 외4(2016)

❍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다양한 이름의 관련 사회적경제 조례들이 제정되어 시행 중임.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4),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20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 등이 제정되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기본법 성격의 법류 제정과 그와 관련한 법률들의 개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의 각 조례들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2-9〉 광역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현황

지역	관련 조례	지역	관련 조례
서울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 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경기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운영 사회적일자리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
부산	사회적경제활동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강원	사회적경제 육성
대구	사회적경제활동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충북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인천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 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충남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광주	사회적경제활동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전북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대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자본 확충	전남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일자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판로지원
울산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경북	사회적경제 육성
세종	사회적경제 육성	경남	사회적경제 육성
		제주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 농업 육성 사회적 자본 관리 육성 사회적 가치 증대 위한 공공조달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019.8.29. 기준

❍ 전라북도는 2019년 1월에 사회적경제과를 설치하여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형성시키고 육성하는 통합조직으로 운영함

- 6대 추진전략으로서, 지원체계 구축, 거버넌스 형성, 인력 양성, 기업성장 지원, 판로 지원, 인프라 확대를 설정함

2) 지원정책[12)]

❍ 개별 부처별로 소관 법률을 근거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정책을 추진

-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증을 통하여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판로지원이나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세제 감면, 사업자금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광역과 지역별로 설립된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여 창업 지원, 홍보, 교육, 사업모델 발굴 등 정책적으로 지원

〈표 2-10〉 사회적경제 조직별 주요 지원정책

구분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공통	개별
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 개발비	판로지원, 교육 및 홍보, 컨설팅, 창업 및 운영 지원, 정책자금 융자 등	세제(법인세,소득세,부가세 감면, 기부금 인정 등) 모태펀드 운영 등
협동조합*	-		-
마을기업	사업비		-
자활기업	인건비, 사업비, 창업자금, 컨설팅비용		사업 및 시설자금 융자

* 자주·자립·자치 등 협동조합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간접지원 중심으로 운영
출처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8쪽

❍ 최근에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 현장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

-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를 위해 전담조직 설치지원 및 역할 확대,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추진 협업체계 구축,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제도화를 통해 민·관 협치기구 운영, 중앙부처/시·도/시·군·구 단위 중간지원기관의 운영확대 및 통합·연계 등의 중간지원기관의 개선을 도모함

12)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 관계부처 합동(2019) 참고

-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뉴딜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한 지역사업 참여 확대와 국·공유 유휴재산의 활용을 확대함
-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시설을 활용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인재양성 확대,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대상 확대 및 공공기관 접근성 확대를 통한 판로 확대 등을 提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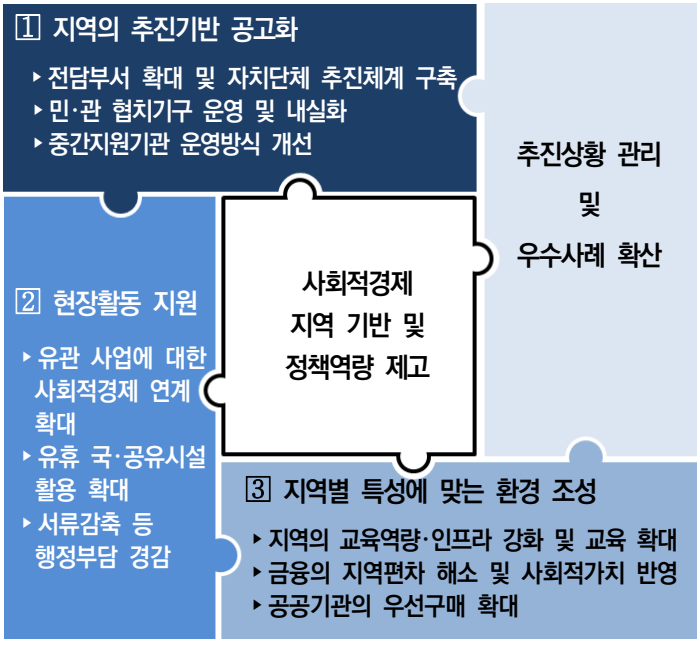

〈그림 2-8〉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추진방향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4쪽

〈표 2-11〉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추진방향 및 내용

방향	전략	내용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자치단체 추진체계	조례 운영 및 전담부서 역할 확대·설치 지원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경제 행정협의회 제도화·내실화·통합운영 통한 협업체계 구축
		교육과정 확대, 교육 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경제 전문직위 운영 등 전문성 제고
	민·관 협치기구	민·관 합동 사회적경제위원회 제도화
		위원회 협의 내용을 계획·사업에 반영 등 운영 활성화
	중간 지원기관 개선	중앙부처 중간지원기관은 맞춤형 및 특화 교육 통해 역량강화와 기관간 상호협업 체계 제도화
		시도 중간지원기관은 중앙 기관과 기능 조정 및 시·도 단위 중간지원기관 연계
		시·군·구 중간지원기관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유사하고 다양한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통합 및 장소통합
현장 활동 지원	지역사업 참여 확대	관련사업 간 연계 가능한록 규정 개정(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장기공공임대주택, 귀농귀촌활성화, 사회적농업
		행정협의회 통해 사업 간 융·복합 및 연계 등 지자체 역할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유휴시설 활용 확대	유휴 국유재산의 수의매각 검토와 유휴 공유재산의 임대 추진
	행정부담 경감	서류의 전산망 이용 확대와 간소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인대양성 확대	맞춤형 표준교육(안) 개발·보급, 훈련프로그램 개발·시행, 강사 제공
		맞춤형 교육을 위해 자치단체 주관 교육 확대
		지역의 대학, 초·중·고, 성장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 시설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금융접근성 제고	지역 기반의 농·수·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금융 역할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보증심사에 사회적가치 반영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기금의 자율적 조성 지원 및 정보공유로 지자체 금융정책 역량 강화
	판로 확대	지자체,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구매기관 명시 및 수혜대상에 자할기업 추가
		공공기관 대규모 계약 발주시 사회적경제 간접구매 확대
		수의계약 금액 한도 등 조례 정비 통해 적극 행정 유도
		공공기관 구매 활동 내실화 및 유통지원센터 추가 설치로 공공·민간 소비 활성화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5~19 정리

제3절 선행연구

(1)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 및 활성화

❍ 사회적경제를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모색하려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옴

❍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에서는, 도시재생에서 사회적경제가 필요한 이유와 사회적경제에서 도시재생에 관심을 두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공생모델 발굴을 제안함

-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자발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공통의 문제를 해결이 목적인 도시재생에서 지역사회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욕구 만족을 위한 상호활동이 진행될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주거환경개선과 집수리 사업, 도시재생신탁업무 운영, 마을카페와 식당 운영을 제안하고, 유휴공간을 신탁하거나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공동체-사회적경제간 연계협력을 위해서 행정협의회 운영, 재생관련 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지역의제 공동 발굴을 제안함

❍ 「창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작용」 연구논문에 따르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상호작용은 지역자원과 연관된 지역 내 자본, 노동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성과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짐

-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무공간이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이 지역의 이슈를 만들어 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지역 내에서의 활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도 지역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수익창출도 함께 도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도 긍정적 여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으로-」 연구는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움직임이 지역사회를 발전 및 개선시키고 네트워크 요소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줌

-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중추 조직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인적·공간적 거점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함을 강조
-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구성된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으로 지역재생을 목표로 한 민간차원의 자생적 도시재생 움직임이 있었던 성수1가 일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에 커뮤니티 구성과 도시재생 추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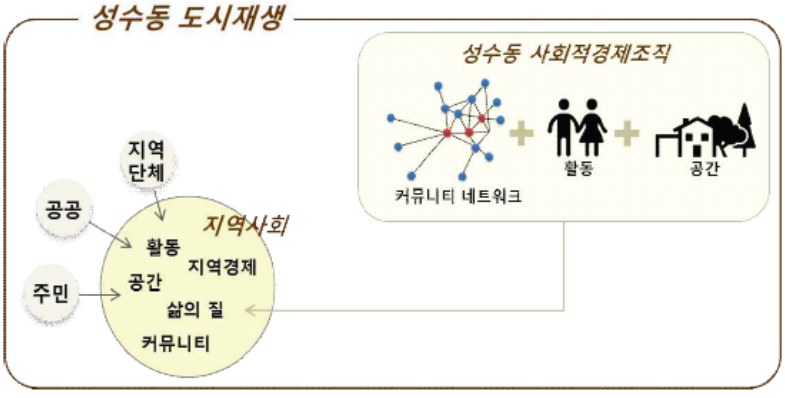

〈그림 2-9〉 성수동 사회적경제 조직 영향

❍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에서는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잠재적 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재생 관련 서비스 공급 기능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파악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지자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차원에서 취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제안함

-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다양한 목표와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기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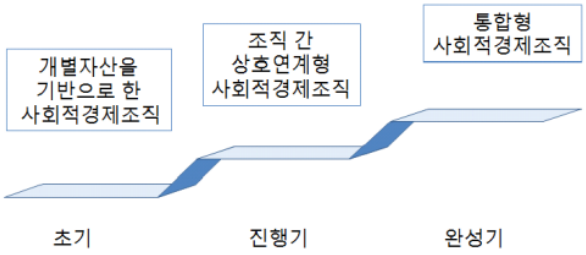

〈그림 2-10〉 단계별 통합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 향후 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조직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 존재하는 자산과 지역리더에 대한 정보수집 및 활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함

❍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도시활력 증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사업 추진,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모니터링, 마을사업 확산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밝힘

-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역별 민간·공공사업의 시행주체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활성화 모델을 발굴 및 구축해야하며 이를 위해 유사업종 간 네트워크, 업계 단계화, 조직 광역화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함

-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기반활동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기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남

-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단순한 객체가 아닌 조직의 참여자이자 소비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고, 수익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관리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 사후관리 확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도시재생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제시되었다고 보았고, 도시재생에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소득 창출, 주민들의 역량강화, 지역주민들 간 연대 강화로 공동체 회복 등 시장이나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을 분석함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주로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간조성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함

○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에서는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제시

- 주민주도의 지역정책과 지속가능한 지역정책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과 접목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회 서비스 확대, 공동체 활동 강화 등 지역중심형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순환 경제의 구축이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함

- 도시재생 연계형 사회적 경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맞는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고, 노후주거지역의 경우 카페/식당/마을 축제 등의 사업을 통한 콘텐츠, 상가·중심시가지의 경우 유휴공간 및 문화자산, 공방 등을 통한 콘텐츠, 기타 특수지역의 경우 지역특산물 제작·판매 등의 콘텐츠 활용을 제안함

(2)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에 참여가 필요하고, 그의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됨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에서 영주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지역활성화와 거점공간 운영 주체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짧은 사업기간과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 형성의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방안을 제안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모든 거점시설의 운영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맡아야 한다는 경직적 사고 해소를 제안함

- 또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공간의 운영 및 위탁방식을 위해 공유재산 활용방식의 개선을 하고, 운영가능한 적정시설을 조성하여 이를 활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와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을 제안함

❍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의 해답일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부정적 효과로 논의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모델이 없고 성과가 미약한 실정을 지적함

- 도시재생사업의 실행주체로서 검토되는 '공동체토지신탁'은 지역기반의 비영리/사회적경제 조직이 토지를 영구적으로 소유·운용함으로써 공간의 지불가능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재생의 토대로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역자산화를 중심으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하고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현실적 제약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자산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사회적경제는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지역 내 내발적 발전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하기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자산화가 필요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토지, 주민, 개발주체, 금융의 구조가 지역을 기반으로 내발적 발전이 가능하게 구조화되어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임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재생 스타트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지원 확대, 토지비축방안 구체화 및 토지은행 기능 확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등 기존 자원 연계, 공동체자산관리 모델 실험 및 관련 제도개선방안 모색,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추진 등의 정책을 제안함

〈표 2-12〉 선행연구

구분	선행연구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연계 및 활성화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신우진 외4, 2016)
	창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과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작용(김애니, 2017)
	사회적경제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 분석 -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으로-(이유리, 2016)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서봉만, 2015)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임상연 외5, 2015)
	도시재생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박세훈, 2015)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박세훈 외4, 2014)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서수정 외1, 2018)
	사회적 경제가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의 해답일까?(토지주택연구원, 2017)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지역자산화를 중심으로-(김륜희, 2017)

○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특성과 강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유도 및 지원함으로써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둘 수 있음

-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구성을 파악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가능한 실질적 사업 모색과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을 제안함

제4절 사례조사

1.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조직 사례

(1)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13)]

-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도시재생기업(CR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첫 사례로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된 마을회사임
- ❍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공동시설로서 조성하여 마을카페로 운영 중인 '백남준기념관', 마을 미디어 및 공동체 공간으로서 '회오리마당', 그리고 공유주방 및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수수헌'을 운영하고 있음
  - 이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로 구성된 동별 공간기획단을 조직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 후에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주민운영 프로그램과 운영 단체를 선정함
-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도시재생교육사업으로서 창신숭인 지역과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창신숭인 도시재생 해설사 양성 교육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함
- ❍ 도시재생 협동조합이 주민공동이용시설 공간을 운영하는데, 백남준 기념관 카페에는 2018년 연간 약 5,300명이 방문하였고, 회오리마당에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연 1,000여 명이 사용하였으며, 수수헌에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연 2,800여 명이 동아리모임, 교육강좌, 단체 회의, 모임 대관 등으로 사용함
-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은 중장기적으로는 젊은 부부와 청년이 지역으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공간과 더불어 봉제인 및 패션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담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개발하고, 지역 내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계획수립 참여, 관리, 시공까지 수탁할 수 있는 전문적 지역관리 마을회사로 발전시킬 것을 모색 중에 있음

13)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내부 자료 참고

(2) 나무와 달[14)]

-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복합개발형,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금융을 지원중인데, '나무와 달'은 도시재생기금 융자 제1호로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기금 융자를 통해 지원 받음
- ❍ 나무와 달은 지역 홍보 및 디자인, 마케팅 기업으로서 그 외에도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부터 지역 콘텐츠 발굴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 또한, 건물 노후화, 구도심 침체 문제가 심각하여 도시재생이 절실히 요구되는 광주 인쇄골목에 입지하여 코워킹 커뮤니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재생에 역할을 하고 있음
  - 코워킹 커뮤니티시설이란 업무, 문화집회, 판매숙박,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동일건축물 내 복합활용 목적으로 함께 운영되는 시설임
  - 나무와 달은 이러한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처음 융자받은 기업으로서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총 비용 6.1억 원 중 70%인 4.3억 원을 융자받아 쇠퇴한 인쇄골목에 청년창업, 주민복지공간 등 코워킹 공간을 조성함
  - 그 밖에도 목포시 소재 상가를 매입 후 리모델링 하는 등 골목경제의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역맞춤형 도시재생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음

(3)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15)]

- ❍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숨은 문화를 통해 지역의 고유특성과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국토교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함

---

14)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blog.naver.com/khgc6300/221332051512)

15) 주택도시보증공사 블로그(blog.naver.com/khgc6300/221332051512)

○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숨이 마을 주민들과 만들어낸 다복경로당의 변신은 다양한 활동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일거리 창출 등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4) ㈜녹색친구들[16]

○ ㈜녹색친구들은 국공유지 등의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토지임대 사회주택과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살리기형 사회주택의 기획 및 개발,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 녹색친구들은 사회주택 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주민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이바지함

- 커뮤니티 공간(카페, 작은 도서관 등)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씀[17]

(5) 두꺼비하우징

○ 두꺼비하우징은 사람과 집, 삶을 생각하는 도시재생 전문 사회적 기업으로서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 '공가'를 11호점까지 공급함

○ 빈집을 활용한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돼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업임[18]

○ 사회적기업 두꺼비하우징은 주민참여에 의한 아파트형 주택관리와 주거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주택난개발로 사라지는 주민들의 정주권과 공동체, 골목문화를 지키려는 활동을 이어감

---

16) blog.naver.com/khgc6300/221332051512

17) 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42

18) blog.naver.com/dasomi0817/221063397313

○ 다양한 실내공사, 주택 개량, 에너지 진단 및 설계, 소셜하우징 빈집프로젝트 등 도시재생 컨설팅을 하면서 주민 참여 및 소통 중심의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재생을 이루고 있음[19)]

(6) 서울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20)]

○ 서울의 도시재생기업으로 선정된 서울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됨

- 조합원은 도시재생사업지역인 중림동, 회현동, 서계동 주민들로서 총 46명이 각자 5~200만원을 출자하여 출자금을 조성하였고, 3개동 주민협의체 대표가 동별 대표로서 협동조합 이사로 참여함

○ 지역관리형인 서울 도시재생기업으로서 도시재생지역에 마련되는 앵커시설과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인 수익사업을 추진하게 됨

○ 국토교통부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획득함

(7)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21)]

○ 성북도시재생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마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

- 성북구 곳곳에 조성된 도시재생 마을(북정마을, 369마을, 장수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소리마을, 삼태기마을, 한천마을, 동방장위골 등)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 스탬프투어는 성북구 도시재생 마을 9곳(북정마을, 369마을, 장수마을, 삼덕마을, 정든마을, 소리마을, 삼태기마을, 한천마을, 동방장위골)과 마을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과 단체들을 알리기 위하여 도시재생 마을 9곳 중에서 3개 이상의 마을을 방문해 리플렛에 마을 스탬프를 찍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사업임

---

19) www.medias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96

20) 서울시 보도자료(2019.5.8.) 참고

21) www.sbcrc.net/about-us/

- 또한, 소형공공임대주택 통합관리 사업으로는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개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형 공공임대 주택의 유휴 주차면을 활용해 주변 저층주거지의 주차문제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8) 사회적기업 꼭두

- ❍ 사회적기업 꼭두는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문화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임
- ❍ 공연, 교육, 체험전시 및 판매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함
- ❍ 문화공간이 부족한 전주의 원도심에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문화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을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문화관련 기관과 조직의 활동을 유도하고 있음
- ❍ 실제로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HUG(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아 기존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1층은 청년창업공간으로 임대(5년간 임대료 인상 없는 조건)하고 2층은 '꼭두' 사무실 겸 다목적 공간, 3~4층은 원룸으로 임대하여 지역의 재생을 위한 활동을 실천하고 있음

(9) 예술로뚝딱 협동조합[22)]

- ❍ 예술로뚝딱 협동조합은 전주의 전기·설비·내장·제관 등 분야의 건설인과 시인·화가·작곡가 등 예술인이 문화기획을 통해 도시재생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목표로 2017년 3월 설립됨
- ❍ 2018년 3월에는 전주 서학동 버스정류장을 예쁘게 꾸미는 '아트벤치' 사업에 참여한 것이 지역사회 공헌활동으로 인정받아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가의 자질과 창업 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도 선정됨

22) 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46

❍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노후주택 개선사업'에도 참여해 새뜰마을·승암마을 12세대의 주택을 수리했으며, 리빙랩 프로젝트 '나는 예술가다'에 선정돼 에코백 만들기 사업 등을 주도함

- 전주시에서 시행한 여러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결과, 2017년 매출액 4,000만원이 2018년에는 1억 2,000만원으로 3배나 증가함

2. 시사점

❍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을 지속가능하게 하고, 도시재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역할이 필요함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은 주민참여와 주민공동체의 역량강화임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상호작용은 지역자원과 연관되어 지역 내 자본, 노동력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의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의 성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기 때문임
-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커뮤니티 네트워크 중추조직의 육성·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지역 외부의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인적·공간적 거점을 마련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계가 필요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

- 공동체토지신탁 등 지역자산화 방식을 통해 지역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토지를 소유·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재생의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음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스타트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회적경제 조직 창업 지원 확대, 토지비축방안 구체화 및 토지은행 기능 확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사회적기업 입주 공간 등 기존 자원 연계, 공동체자산관리모델 실험 및 관련 제도개선방안 모색, 지역자산화 시범사업 추진 등이 제안될 수 있음

제5절 소결

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기존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등장

❍ 경제성장과 도시화의 과정 속에서 낡고 노후한 주택과 시가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와 신시가지를 건설하여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규모 개발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은 기성시가지의 도시조직과 도시경관을 변형시키고 저해시키는 비판을 받아옴
- 기성시가지가 가지고 있던 소규모 블록, 블록 내부에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좁은 골목, 소규모의 다양한 형태의 필지, 그리고 대지 내 오래되고 역사성을 보유한 형태의 주택들을 사라지게 함
-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기존 마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주민들이 기존 주택과 상가들의 철거로 인해 터전을 상실하게 되었고, 새로 형성된 지역은 부동산 가치의 급등으로 기존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존 지역사회의 해체로 나타남

❍ 도시재생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대규모 개발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기존 지역사회가 유지되는 정비방식 전환의 요구로 등장함

- 도시재생은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을 보수하고 개선함으로써 조금씩 생활환경을 바꿔나가는 방식임
- 문제공간을 조금씩 고쳐나가면서 마을의 경관을 유지하게 되고, 주민들도 급격한 주거비용의 증가 없이 기존의 주택과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유지하게 됨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경제성 우선주의에 따라 취약계층이 재화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대안으로 나타남

- 시장경제 체제의 경제효율성 강조로 인한 사회적불평등과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화됨
- 사람과 공동체, 참여와 구성원간 연계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추구가 요구됨

2) 사회적 목적의 추구

❍ 도시재생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아닌 사회적 개선의 추구

- 도시재생은 주민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경제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도시활력을 회복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 역시 사회적 목적으로서 시장경제에서 취약한 계층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와 일자리의 제공과 더불어 주민들의 공동권익을 지향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을 추구함

3)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도시재생이 사회적 목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정비의 대체방식으로서 도입됨에 따라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하드웨어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주민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와 주민의 참여가 도시재생의 주요 목표이지만 주민활동의 근원이 되는 주민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보다는 주민공동체 활동의 장소로서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의 비중이 큼

❍ 반면,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 또는 주민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의 역량 제고와 조직 운영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사업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한계

1) 주민참여의 한계

❍ 도시재생의 핵심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참여이지만 실제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도와 역할에 한계 노정

- 마을의 환경변화를 결정하는 도시재생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추진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비율은 낮은 편임
- 주로 기존의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상인회 등)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주민협의체가 조직되는 경향이 있음

❍ 도시재생의 주민 리더가 부재하고 리더의 역량 미흡

- 주민들은 마을사업이 경험이 부족하므로 마을주민들의 협력을 유도하고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지식과 리더십을 갖춘 주민리더를 발굴하고,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2) 경제성 미흡

❍ 국가재정에 의존하는 공공주도사업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비 매칭방식의 지방비를 포함하여 국가지원 보조금을 이용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됨
- 도시재생사업의 구성은 도로개설 및 정비, 가로환경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등 물리적 공간조성과 환경정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향을 보임
-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므로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사업비 한도 내에서 주로 물리적 공간조성과 환경정비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짜맞추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 도출에 미흡함

- 도시재생사업비로 추진하는 마중물사업으로 마을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의 자체적인 지역활력을 위한 체계를 갖춰야 함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상생협력상가 등을 활용하여 향후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구상은 부족함

❍ 사회적경제가 갖는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업경영상 경제성이 낮음

-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높은 사업수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업발굴 및 추진이나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나타냄

3) 지속가능성의 한계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건축공간의 운영관리 주체 부재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과 공원 등 주민들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조성한 후에는 공간의 기능유지를 위한 운영관리가 수반되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으로 물리적인 공간의 조성은 가능하지만 그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 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대부분 계획에서는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운영주체를 육성한다고 제시하지만 계획내용이 형식적인 서술에 그치거나 교육내용이 실질적인 운영관리 주체 육성을 위한 실무교육 제시가 미흡한 경향이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기업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 역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수익구조 미흡

- 사회적경제 조직은 구성원이 같은 목적을 공유하거나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 주민이기도 하고 사회적 목적 달성을 우선시하므로,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기업과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국가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운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국가의 지원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3.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강점과 장점을 공유하여 상호협력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생 필요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약점과 한계를 상호간 극복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

〈그림 2-1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

3 장

전북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여건

Jeonbuk Institute

1. 도시재생 여건
2. 사회적경제 조직 여건
3. 소결

제3장 전북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여건

제1절 도시재생 여건

1. 도시재생 추진 현황

○ 전북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도시재생은 한옥마을 재생부터 시작됨

- 한옥마을 재생은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주거지 정비사업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도시재생의 성과를 가져옴

○ 국토부의 도시재생 R&D 테스트베드 사업이 전주 노송동에 적용됨

- 2011년에 국토부가 기존 도시정비 대안으로 개발된 도시재생의 R&D 성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주와 창원에서 테스트베드를 지정하여 시행함

○ 2013년 도시재생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에 의한 전북의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일반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22곳에서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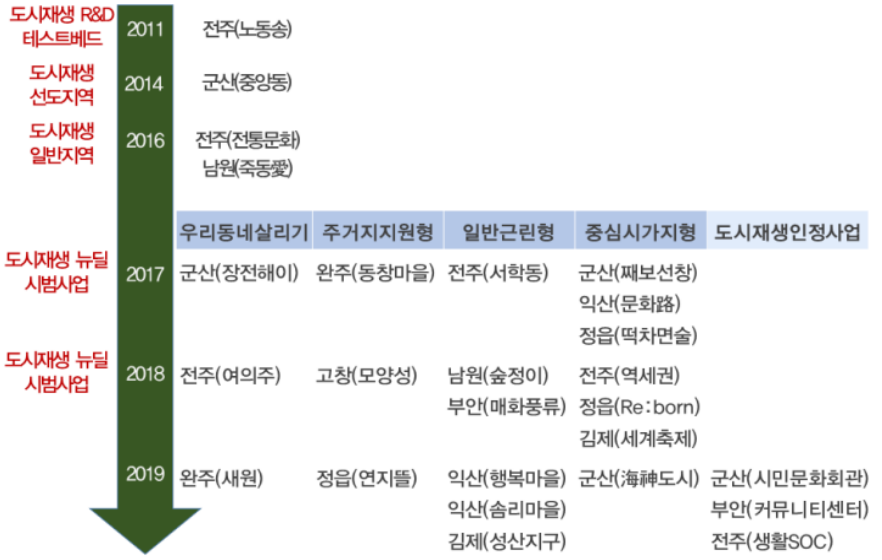

〈그림 3-1〉 전북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2014년에는 국가에서 시범사업의 성격의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선정하면서 군산 내항지구가 전북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됨

- 군산 중앙동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근대역사건축물이라는 지역의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근대역사문화를 주제로 특화한 도시재생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함

❍ 2016년에는 전주와 남원에서 도시재생 일반사업이 선정·추진됨

- 전주의 노송동, 중앙동, 풍남동 일대의 원도심지역에서 전통문화를 주제로, 남원의 동충동, 죽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전통소설 춘향전을 주제로 문화·예술 도시재생이 진행 중임

❍ 2017년부터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을 확대·발전시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전북에는 총 19곳이 진행되고 있음

-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으로 전주, 군산, 익산, 정읍, 완주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됨

- 특히, 완주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군지역에서도 가능하도록 변경 후 전북도 내 첫 군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사례가 됨

- 2918년 전주, 정읍, 남원, 김제, 고창, 부안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

- 2019년에는 정읍, 군산, 익산, 김제, 완주에서 6곳이 선정됨

❍ 2018년부터는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이 도입되면서 정읍(2018), 익산(2019에서는 LH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됨

❍ 2019년에 도입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유형 중 하나로서 도시재생인정사업이 군산, 부안, 전주에서 각각 선정됨

❍ 2020년에는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별도로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군산, 장수, 임실에서 추진할 계획임

〈표 3-1〉 전라북도 도시재생 추진 현황

선정 연도	시군	유형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군비	
2014	군산	근린일반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200	100	20	80	사업 완료
2016	전주	중심시가지	전주,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182	91	18	73	
	남원	일반근린	문화·예술로 되살아나는 도시공동체 “죽동愛”	100	50	10	40	
2017	전주	일반근린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63	100	16	47	
	군산	중심시가지	“째보선창으로 밀려오는 3개의 큰 물결”	250	150	25	75	
	군산	우리동네 살리기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해이지구	63	38	6	19	
	익산	중심시가지	역사가(歷史街)문화로(文化路)	250	150	25	75	
	정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으로 살리는 시민경제도시 정읍	250	150	25	75	
	완주	주거지지원	만경강변 햇살 가득 동창마을	166	100	16	50	
2018	전주	중심시가지	전주 역세건 혁신성장 르네상스	250	150	25	75	
	전주	우리동네 살리기	용머리 여의주마을 우리동네 살리기	75	45	7	23	
	정읍	중심시가지	Re:born 정읍, 해시태그[#] 역(驛)	265	150	25	90	공공기 관제안
	남원	일반근린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 마을	142	85	14	43	
	김제	중심시가지	역사·문화·사람이 만나, 다채로움이 펼쳐지는 “세계축제도시 김제”	250	150	25	75	
	고창	주거지지원	역사와 전통, 스마트 기술이 융합된 문화유산 모양성 마을 여행	142	85	14	43	
	부안	일반근린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142	85	14	43	
2019	정읍	주거지지원	일과 육아를 함께, 행복한 삶터 “연지뜰”	142	85	14	43	
	군산	중심시가지	해산물의 맛과 근대문화의 멋이 함께하는 해신도시 군산	250	150	25	75	
	익산	일반근린	푸른솔 세대통합 행복마을	167	100	16	51	공공기 관제안
	익산	일반근린	독립의 역사를 품은 솜리마을 재도약의 꿈	142	85	14	43	
	김제	일반근린	미래의 삶터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	143	85	14	43	
	완주	우리동네 살리기	서로 어루어져 꿈꾸는 새원	75	45	7	23	

자료 : 오병록(2018)을 참고하였고, 지원센터 현황은 2019.11월 기준으로 수정함

2. 도시재생 기반

1) 도시재생 제도적 기반

❍ 도시재생의 활성화와 지원을 뒷받침하는 조례는 14개 시군 모든 지역에 제정되어 있어 도시재생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음

〈표 3-2〉 도시재생 조례 현황

구분	주민 참여	주민 협의체 설립	도시 재생 위원 회	전담 조직	지원 센터 설치	활성화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사업 추진 협의 회	도시 재생 사업 지원	특별 회계 설치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추가
전북			○	○	○	승인		환수			
전주	○	○	○		○	○	○		○	건폐율 주차장	
군산	○	○	○	○		○	○	○	○	건폐율 주차장	전문가 활용
익산	○	○ 지원	○	○	○	○	○	○		건폐율	
정읍		○	○	○	○	○ 포상	○	○	○	건폐율 주차장	상생협약체결권장 지원 상생협력상가조성
남원	○	○	○	○	○	○	○	○		건폐율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사용료 감면
김제		○ 지원	○		○			○			
완주	○	○ 지원	○		○	○ 포상	○	○	○	건폐율	전문가 자문회의 상생협약체결권장 지원 상생협력상가조성
진안	○	○	○		○	○	○	○		건폐율	
무주	○	○ 지원	○		○	○	○	○	○	건폐율	사업관리 전문가 자문회의
장수	○	○	○	○	○	○		○	○	건폐율 주차장	
임실	○	○	○	○	○			○			
순창	○	○	○	○	○	○	○	○		건폐율 주차장	
고창	○	○	○	○	○	○	○	○	○	건폐율 주차장	
부안	○	○	○	○	○	○	○	○	○	건폐율 주차장	공동이용시설사용료면제 전문가 자문회의

❍ 조례의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 도시재생 지원 조직 설치,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규정을 담고 있음

- 주민참여 권리 규정과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 규정 등을 통해 도시재생에 주민참여가 가능하게 하고 또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전담조직의 설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도시재생 추진과 지원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시재생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물리적 환경개선과 환경정비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는데, 주로 건폐율의 완화와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를 제공하고 있음

2) 도시재생 지원조직 기반

❍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토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의 도시재생 업무 지원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체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북 각 시군에는 도시재생 기초지원센터와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어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역할로서 운영하고 있음

-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이 있는 시지역에서는 시단위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위의 현장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군지역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단위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일 도시재생사업지역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현장도시쟁지원센터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와 사업참여 유도를 위한 주민대상 역량강화 교육이 모든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도시재생대학 외에 별도의 도시학교나 아카데이 등의 역량강화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음

〈표 3-3〉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구분	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전주	○	○	○	○
군산	○	○	○	○
익산	○	○	○	○
정읍	○	○	○	○ (도시학교)
남원	○	○	○	○
김제	○	○	○	○ (도시재생아카데미)
완주	○		○	○
진안			○	
무주			○	○
장수	○		○	
임실	○		○	○
순창	○		○	
고창	○		○	
부안	○		○	○

자료 : 오병록(2018) 참고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 여건

1.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1) 사회적기업

○ 2019.7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24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음

○ 사회적기업의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435개로서 전체의 19.3%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에 16.7%(375개)가 입지하고 있음

○ 전북의 사회적기업은 133개로서 전체의 5.9%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표 3-4〉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	435	103	75	137	105	66	79	12	375
비율	19.3	4.6	3.3	6.1	4.7	2.9	3.5	0.5	16.7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120	98	95	133	116	145	103	52	2,249
비율	5.3	4.4	4.2	5.9	5.2	6.4	4.6	2.3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기업은 기타 분야를 제외하면 문화예술 분야가 전체의 11.3%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 분야가 8.9%를 차지함

-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의 인적자원으로서 지역특화 도시재생의 주체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교육 및 보육, 사회복지, 청소, 환경, 보건 등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도시재생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표 3-5〉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수	비율	구분	수	비율
간병가사지원	98	4.4	보건	16	0.7
고용	9	0.4	보육	14	0.6
관광운동	52	2.3	사회복지	115	5.1
교육	201	8.9	산림보전및관리	10	0.4
기타	1,151	51.2	청소	206	9.2
문화예술	254	11.3	환경	113	5.0
문화재	9	0.4	합계	2,249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실현을 위한 유형 중에는 일제리제공형이 가장 많음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1,499개로서 전체의 2/3을 차지하고 있음
- 창의·혁신형 12.6%, 혼합형 8.4%, 사회서비스제공형 6.2%, 지역사회공헌형 6.1%임

〈표 3-6〉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별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 형	혼합형	계
수	139	1,499	138	283	190	2,249
비율(%)	6.2	66.7	6.1	12.6	8.4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2)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역시 서울에 가장 많은 178개(16.9%)가 존재하고 다음으로 경기에 131개(12.4%)가 있음

❍ 전북은 81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서울 및 경기, 경북(101개, 9.6%), 강원(87개, 8.3%)를 제외하면 가장 많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음

〈표 3-7〉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	178	70	47	47	19	37	48	10	131
비율	16.9	6.6	4.5	4.5	1.8	3.5	4.6	0.9	12.4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87	10	25	81	59	101	54	50	1,054
비율	8.3	0.9	2.4	7.7	5.6	9.6	5.1	4.7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3) 협동조합

○ 전국의 협동조합 수는 2019.6월 현재 총 15,624개임

○ 협동조합은 전체의 23.5%가 서울에 존재하고 있고, 이어 경기에 18.0%가 존재하고 있어, 수도권에만 41.8%가 활동하고 있음

○ 전북에는 1,010개 협동조합이 있어 전체의 6.5%인데, 이는 전북의 전국 대비 인구비중인 3.5%(2018년 기준, 통계청)에 비해 약 2배 높은 비율임

〈표 3-8〉 지역별 협동조합 현황(2019.6)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	3,676	775	649	450	802	625	281	116	2,818
비율	23.5	5.0	4.2	2.9	5.1	4.0	1.8	0.7	18.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수	851	485	642	1,010	822	721	644	257	1,430
비율	5.4	3.1	4.1	6.5	5.3	4.6	4.1	1.6	100

자료 : 협동조합(www.coop.go.kr)을 통해 메일로 제공받음

○ 협동조합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21.47%인 도매 및 소매업이고, 교육 서비스업이 15.1%를 차지하여 두 번째 많은 협동조합 업종임을 알 수 있음

〈표 3-9〉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업종	수	비율	업종	수	비율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57	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66	3.6
건설업	382	2.4	숙박 및 음식점업	569	3.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3	0.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06	9.0
광업	8	0.1	운수업	358	2.3
교육 서비스업	2,356	15.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20	1.4
국제 및 외국기관	19	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4	3.6
농업, 어업 및 임업	1,477	9.5	제조업	1,357	8.7
도매 및 소매업	3,349	2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09	3.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92	5.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200	1.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4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98	6.4
			계	15,624	100

자료 : 협동조합(www.coop.go.kr)을 통해 메일로 제공받음

4) 마을기업

❍ 총 1,592개의 마을기업 중 경기에는 전체의 11.5%인 183개 기업이 있음

❍ 전북에는 전체의 6.9%로서 110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표 3-10〉 지역별 마을기업 현황(2019.6월)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수	96	78	89	56	61	53	44	30	183
비율(%)	6.0	4.9	5.6	3.5	3.8	3.3	2.8	1.9	11.5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수	122	88	134	110	161	131	120	36	1,592
비율(%)	7.7	5.5	8.4	6.9	10.1	8.2	7.5	2.3	100.0

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마을기업. 2020.2.3. 접속

○ 마을기업의 사업유형에서는 일반식품 사업유형이 전체의 43.3%로서 가장 많이 차지함

○ 다음으로는 전통식품 유형과 관광체험 유형의 마을기업이 각각 224개(14.1%), 201개(12.6%)를 나타내고 있음

- 마을의 특산작물을 활용한 식품판매형과 농촌마을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관광체험형 마을기업이 모두 70.0%를 차지하고 있어, 마을의 장점과 자원을 발굴하여 마을기업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사업유형별 마을기업 현황

사업유형	수	비율(%)	사업유형	수	비율(%)
건축업	1	0.1	서비스	3	0.2
공예품	90	5.7	에너지	6	0.4
관광체험	201	12.6	유통기업	22	1.4
교육	64	4.0	의류신발	18	1.1
기타	145	9.1	일반식품	689	43.3
문화예술	67	4.2	재활용	42	2.6
물류배송	13	0.8	전통식품	224	14.1
사회복지	7	0.4	계	1,592	100.0

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자치분권실 > 마을기업. 2020.2.3. 접속

2. 전북 여건

1)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현황

▌사회서비스분야별

○ 2019.7 현재 전라북도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총 133개임

○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주로 문화예술 분야, 청소 분야, 교육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18개로서 전체의 13.5%이고, 청소 분야도 17개인 12.8%로서 수위 그룹을 형성함
- 교육 분야도 13개로서 9.8%를 차지하여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유함

❍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방과후학교 및 아이들의 교육 관련 사회적기업이 9.8%로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임

❍ 49.6%를 차지하는 기타 분야에는 농산물 및 음식의 제조·가공·판매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 음식재료인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와 관련되거나 김치 등의 반찬이나 베이커리 및 커피 관련 식품의 제조·판매가 많음
- 집수리나 상품 제조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업이 기타에 포함되어 있음

〈표 3-12〉 사회서비스분야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간병 가사 지원	관광 운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보육	사회 복지	산림 보전 및 관리	청소	환경	기타	계
수	3	1	13	18	1	1	5	1	17	7	66	133
비율 (%)	2.3	0.8	9.8	13.5	0.8	0.8	3.8	0.8	12.8	5.3	49.6	1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업종별로 살펴보면, 농식품, 환경, 제조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전북의 농정 우선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적기업 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표 3-13〉 업종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가사 간병	교육	농식품	문화 관광	문화 예술	보건	임업	제조	환경	기타	계
수	6	13	31	12	6	1	1	18	23	22	133
비율 (%)	4.5	9.8	23.3	9.0	4.5	0.8	0.8	13.5	17.3	16.5	1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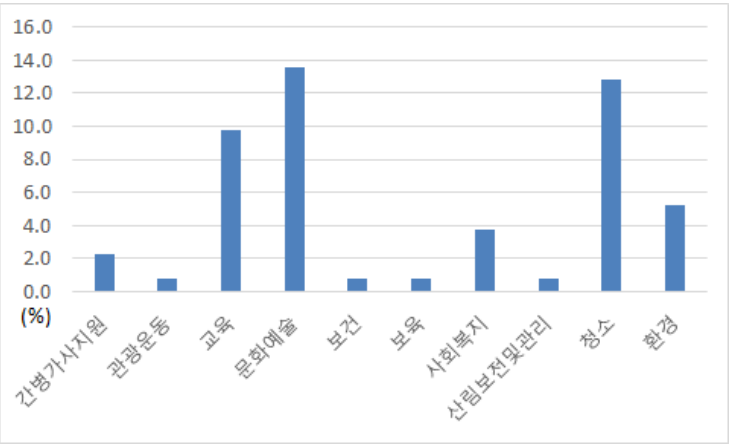

〈그림 3-2〉 사회서비스분야별 전북 사회적기업 비율 현황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 전북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적 중 일자리제공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이 66.8%로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창의·혁신형이 12.0%, 사회서비스제공형이 9.0%, 혼합형이 8.3%이고, 지역사회공헌형이 4.5%로 가장 적음

〈표 3-14〉 사회적목적실현 유형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혁신형	혼합형	계
수	12	88	6	16	11	133
비율(%)	9.0	66.2	4.5	12.0	8.3	1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지역별

❍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 사회적기업의 42.1%가 전주(56개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음

❍ 군산에는 11.3%(15개), 익산 9.8%(13개), 정읍과 완주 5.3%(7개)의 순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역별로 많이 분포하지만, 무주와 부안에는 사회적기업이 오직 1개(0.8%)만 활동하고 있음

〈표 3-15〉 지역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수	56	15	13	7	7	6	6	
비율(%)	42.1	11.3	9.8	5.3	5.3	4.5	4.5	
구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수	4	1	2	3	6	6	1	133
비율(%)	3.0	0.8	1.5	2.3	4.5	4.5	0.8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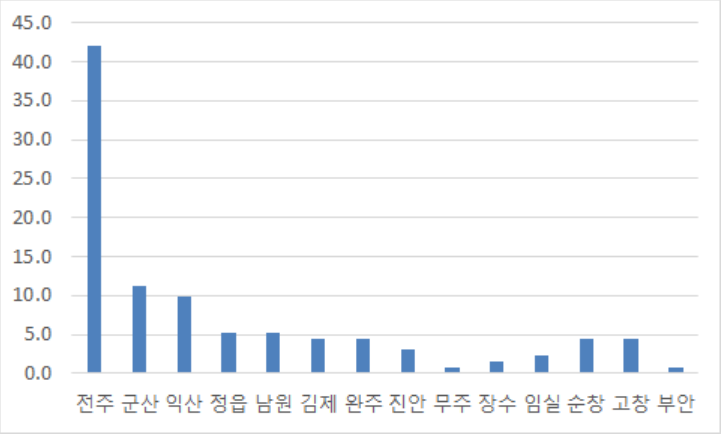

〈그림 3-3〉 지역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인증연도별

❍ 전북의 사회적기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증가추세에 있음을 볼 수 있음(2019년 중반인 7월까지의 자료임을 고려)

- 시장경제에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근에 사회적기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가치 인정과 수요가 증대하였음

❍ 사회적기업 인증 기업수가 가장 많았던 2014년까지 증가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부터는 매년 큰 변화 없이 꾸준히 인증을 받고 있음

-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추세로 볼 수 있지만 그 값의 차이가 작고, 추후 2019년 연말 데이터를 추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3-16〉 인증연도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2019.7)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	1	6	1	8	6	14	12
비율(%)	0.8	4.5	0.8	6.1	4.5	10.6	9.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수	17	15	16	15	14	7	132
비율(%)	12.9	11.4	12.1	11.4	10.6	5.3	100.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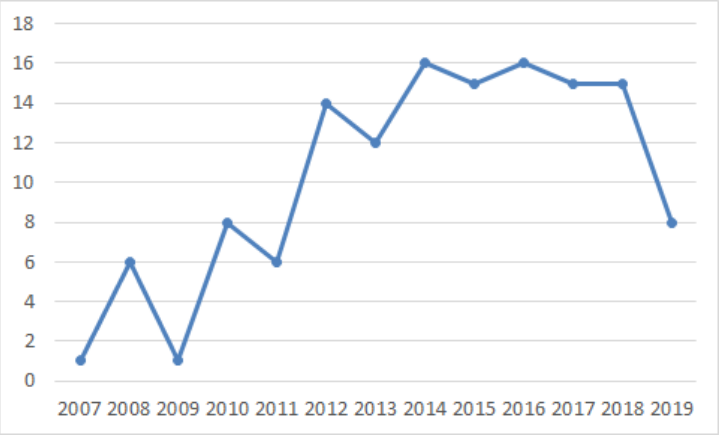

〈그림 3-4〉 인증연도별 전북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2) 예비사회적기업(2019.6월 기준)

▌지역별

○ 전북의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은 익산과 전주의 수치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익산에 23개(37.7%), 전주에 16개(26.2%)로서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음

-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익산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활동이 가장 많다는 것이 특징임

〈표 3-17〉 지역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월)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수	16	3	23	5	5	1	3	
비율(%)	26.2	4.9	37.7	8.2	8.2	1.6	4.9	
구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수	0	1	1	1	2	0	0	61
비율(%)	0.0	1.6	1.6	1.6	3.3	0.0	0.0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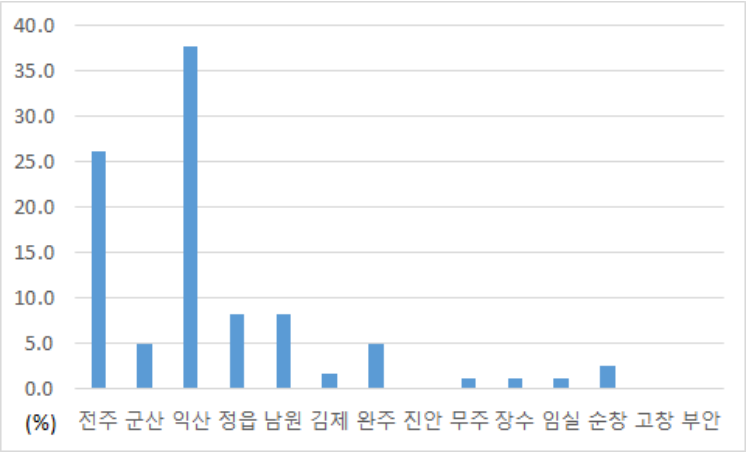

〈그림 3-5〉 지역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지정연도별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2017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음

- 2016년 1개에서 2017년에는 16개로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26개로 증가함

❍ 2019년 6월 자료인 점을 감안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판단할 수 있음

〈표 3-18〉 지정연도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2019.6월)

구분	2016	2017	2018	2019	계
수	1	16	26	18	61
비율(%)	1.6	26.2	42.6	29.5	100.0

자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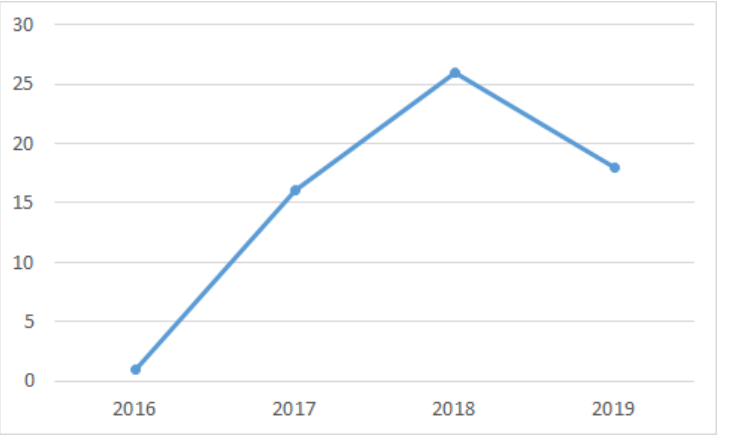

〈그림 3-6〉 지정연도별 전북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2) 협동조합

▌ 업종별

❍ 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전체의 25.4%로 수위를 차지함

❍ 다음으로는 12.4%를 차지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함께, 농업, 어업 및 임업 10.7%, 제조업 9.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2%, 교육 서비스업 8.3%로서 2순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표 3-19〉 업종별 협동조합 현황

업종	수	비율	업종	수	비율
건설업	27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3	9.2
광업	1	0.1	운수업	13	1.3
교육 서비스업	84	8.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	1.8
농업, 어업 및 임업	108	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9	3.9
도매 및 소매업	257	25.4	제조업	98	9.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40	4.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1.7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0.6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9	0.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1	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5	12.4
숙박 및 음식점업	44	4.4	계	1,010	100

자료 : 협동조합(www.coop.go.kr)을 통해 메일로 제공받음

〈그림 3-7〉 업종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자료 : COOP협동조합

▌ 지역별

❍ 전주지역에 371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 도 전체의 1/3 이상인 36.7%를 차지하고 있음

❍ 익산이 13.6%, 완주가 11.5%, 군산이 11.4%로서 10% 이상의 비율을 갖는 지역임

〈표 3-20〉 지역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수	371	115	137	64	59	31	116	
비율(%)	36.7	11.4	13.6	6.3	5.8	3.1	11.5	
구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수	19	21	12	15	11	15	24	42
비율(%)	1.9	2.1	1.2	1.5	1.1	1.5	2.4	100

자료 : COOP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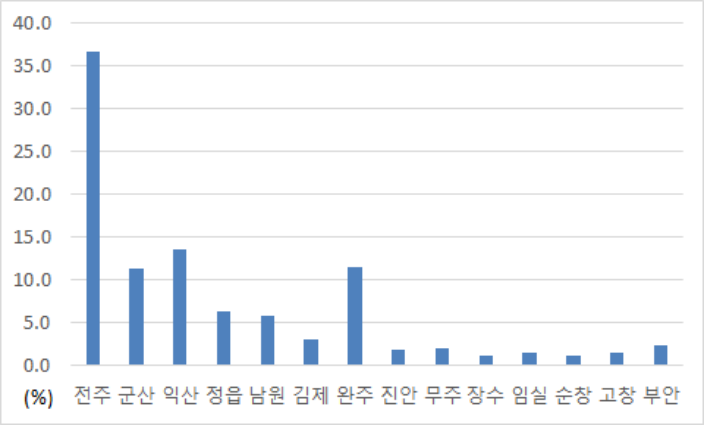

〈그림 3-8〉 지역별 전북 협동조합 현황

자료 : COOP협동조합

3) 마을기업

▌업종별

❍ 전북 도내 마을기업은 일반식품과 전통식품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마을기업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 두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마을기업의 70.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3-21〉 업종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2019.6월 기준)

구분	공예품	관광체험	물류배송	사회복지	의류신발	일반식품	재활용	전통식품	기타	계
수	7	14	2	1	1	45	1	33	6	110
비율(%)	6.4	12.7	1.8	0.9	0.9	40.9	0.9	30.0	5.5	100.0

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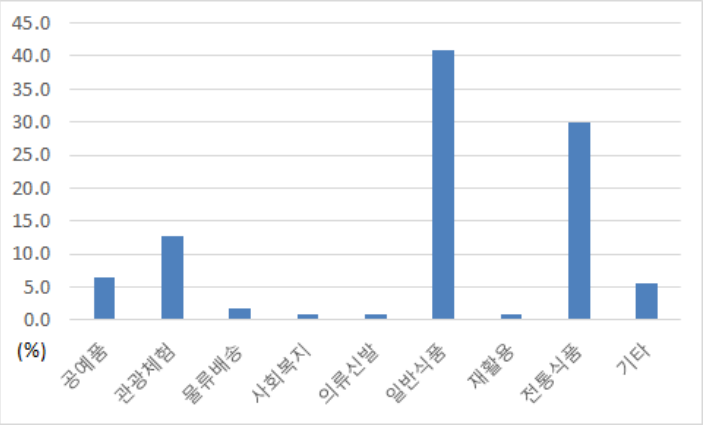

〈그림 3-9〉 업종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행정안전부(www.mois.go.kr)

▌ 지역별

❍ 마을기업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정읍에 17개로서 전체의 15.5%를 차지하여 전북 내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완주가 13개로서 11.8%를 차지하여 두 번째 많은 마을기업이 분포하고 있음

❍ 그 외 지역들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7개의 마을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표 3-22〉 지역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구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수	5	5	10	17	6	8	13	
비율(%)	4.5	4.5	9.1	15.5	5.5	7.3	11.8	
구분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계**
수	6	7	7	9	8	6	3	110
비율(%)	5.5	6.4	6.4	8.2	7.3	5.5	2.7	100.0

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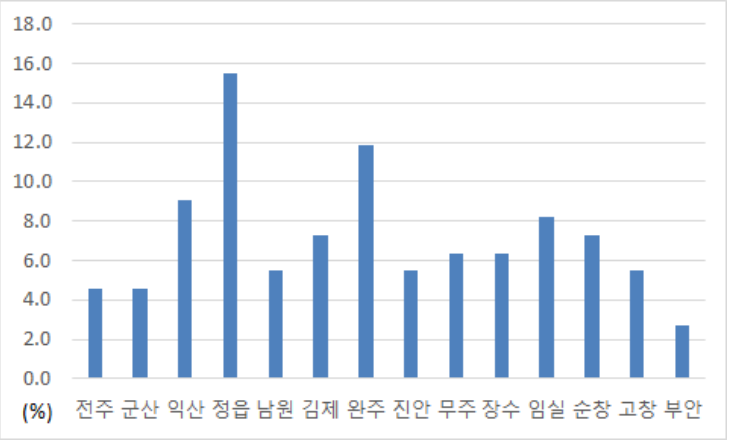

〈그림 3-10〉 지역별 전북 마을기업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www.mois.go.kr)

3. 지원 기반

1) 제도적 기반

❍ 사회적경제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는 도지사의 사회적경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책무를 명시하고 있고,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구매 실적 관리와 판로 지원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을 제시함
-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고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시설비·재정 등의 지원과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전주와 군산, 완주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나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재정·시설물 지원 및 보조금 지급 또는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북 내 시군 중 익산과 완주를 제외한 시군은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 익산과 완주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표 3-23〉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현황

구분	도·시·군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전북,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남원, 김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전북, 완주

〈표 3-24〉 자치단체별 조례 현황(2019.8월 기준)

지역	합계	시·도		시·군·구		개별 기업 지원 조례 포함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소계	조례명	소계	운영지역	
전국	200	30	설치 시·도: 16/17	170	143/226	시도 46, 시군구 315
서울	35	4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사회적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 조례 사회투자기금 조례	31	20/25	시 6 / 구 48 운영지역 25/25
부산	7	2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5	3/16	시 4 / 군·구 25 운영지역 16/16
대구	5	2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3	3/8	시 4 / 군·구 13 운영지역 8/8
인천	12	3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9	9/10	· 3 / 군·구 10 운영지역 10/10
광주	9	2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7	5/5	시 4 / 구 7 운영지역 5/5
대전	3	0	-	3	3/5	시 2 / 구 10 운영지역 5/5
울산	4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3	3/5	시 3 / 군·구 7 운영지역 5/5
세종	2	2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사회투자기금 조례	-	-	2
경기	36	3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	33	28/31	도 3 / 시·군 46 운영지역 31/31
강원	14	1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13	11/18	도 1 / 시·군 25 운영지역 18/18
충북	3	1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	2/11	도 3 / 시·군 15 운영지역 11/11
충남	14	2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12	9/15	도 2 / 시·군 19 운영지역 15/15
전북	6	1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5	4/14	도 3 / 시·군 22 운영지역 14/14
전남	22	2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20	20/22	도 2 / 시·군 21 운영지역 21/22
경북	15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14	14/23	도 1 / 시·군 25 운영지역 23/23
경남	11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10	9/18	도 1 / 시·군 24 운영지역 18/18
제주	2	2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	4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26쪽

2) 정책적 지원

(1) 행정조직

❍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전북도청에는 행정조직으로 사회적경제과를 2019년에 편성하여 기존 사회적경제 업무역량을 확대함

- 사회적경제과 내에는 공동체와 관련한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동체정책팀,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적기업팀, 마을기업 관련한 협동경제팀으로 구성됨

〈표 3-25〉 자치단체별 전담부서 설치 현황(2019.6월 기준)

	시·도	시·군·구		
	課 명칭	과 단위	팀 단위	타업무 병행
합계	12 (70.1%) ※일자리/공동체 5	12 (5.3%)	74 (32.7%)	140 (62%)
서울	사회적경제담당관	5	19	1
부산	사회적경제과		1	15
대구	사회적경제과		3	5
인천	사회적경제과		4	6
광주	일자리정책관		5	
대전	사회적경제과		5	
울산	사회적경제과			5
세종	참여공동체과 팀	-		
경기	사회적경제과	1	15	15
강원	사회적경제과	1	5	12
충북	민간협력공동체과			11
충남	경제정책과 팀	2	2	11
전북	사회적경제과	3	4	7
전남	사회적경제과		5	17
경북	사회적경제과		2	21
경남	사회적경제과		4	14
제주	경제정책과	-		

출처 : 관계부처 합동(2019) 25쪽

(2)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23)]

○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회문제 해결 등의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회적기업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마을기업 육성, 협동조합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센터의 업무는 팀별로 사회적경제팀, 자치경제팀, 사회적기업가육성팀으로 구성됨

〈표 3-26〉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사회적 기업가 육성	-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자질과 창업의지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창업공간 제공, 창업비용(활동비, 교육 및 컨설팅비, 사업화개발비) 지원, 멘토링 서비스, 네트워크 지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사회적기업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들의 융·복합 자원들을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홍보 및 마케팅비, 외주용역비, 사업추진비, 기자재 임차비, 재료 구입비 등의 지원
마을기업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 육성 - 마을기업은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협동조합 지원	-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경영컨설팅,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대상 방문교육, 협동조합 홍보 및 판로지원(대상시상, 판매행사), 대학교 정규 수강과목 개설지원(아카데미) 등의 지원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 전북사회적경제페스티벌 지원(문화·예술분야 축제 공연), 사회적경제기업 스타일 지원(디자인개발 및 관광기념품 발굴), 사회적경제 관광활성화 지원(지역축제 참가 시 체험, 행사 지원), R&D기술개발·고도화 지원(기술개발비 및 멘토링 지원)

자료 :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www.jbba.kr)

23)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www.jbba.kr) 참조

▌ 전북사회적기업연대회의[24)]

○ 전북사회적기업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전라북도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센터로서 지역이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도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임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과 자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정인증 및 설립 지원, 현장지원 모니터링 행정지원, 유통 및 홍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

○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9년에 설치됨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중앙공모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컨설팅,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의 역할을 함

○ 시군단위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중복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도시재생 교육 및 역량강화를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

○ 전북도 차원의 도시재생 기획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지속가능지표 개발 등의 연구기능도 수행하게 됨

▌ 시군단위 및 기초단위 중간지원조직

○ 시군단위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시군 및 기초단위 지원센터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진안과 무주를 제외한 12개 시군에는 시군단위의 기초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주,

24) 전북사회적기업연대회의(www.jbsecoop.or.kr) 참조

군산, 익산, 정읍, 김제에는 도시재생사업지역의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13개 시군에 농촌마을의 사업과 사회적경제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3)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25)]

○ 지원 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 기간

-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지원기간 3년

○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9.955%)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26)]

○ 지원 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전라북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25) 전라북도 공고 제2020-114호

26) 전라북도 공고 제2020-114호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지원 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지원 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27)]

❍ 지원대상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 한도

- 기업별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재원비율(원칙) :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 재원비율(선택가능)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보조금 사용가능 항목

- 신규 및 노후 시설·장비 설치·구입, 교체

27) 전라북도 공고 제2020-115호

- 생산(용역) 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장비
- 생산품의 운반 및 이동 등 생산 활동에 연계된 시설·장비
- 생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지속적 관리와 활동이 가능한 물품)
- 약정기간 내 시·군비 확보 및 설치 가능 시설·장비(물품)

제3절 소결

1. 도시재생 추진과 기반의 조성

1) 꾸준한 도시재생 추진

○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의 선정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 쇠퇴지역의 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된 2017년 이후 매년 6~7곳의 도시재생이 추가적으로 추진됨

- 각각 4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와 군산을 중심으로 시지역에서 쇠퇴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활발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음
- 군지역이 도시재생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2017년부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재생 추진 여건이 불리한 군지역에서도 총 4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임

○ 사업규모와 내용을 달리하는 유형별로 다양한 다수의 도시재생을 추진함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사업대상과 사업규모에 부합하는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을 특화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3-27〉 유형별 및 시군별 도시재생 추진 현황

구분	유형	시	군	주제
도시재생 선도지역	일반규모	군산		근대역사 문화지구
도시재생 일반지역	중심시가지	전주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일반	남원		죽동愛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우리동네살리기	군산		장전·해이지구
	주거지지원형		완주	동창마을
	일반근린형	전주		서학동마을
	중심시가지형	군산		째보선창
		익산		역사街 문화路
		정읍		지역특화산업(떡·차·면·술)
도시재생 뉴딜	우리동네살리기	전주		여의주마을
			완주	새원마을

일반지역	주거지지원형	정읍		연지뜰
			고창	모양성 마을
	일반근린형	익산		행복마을
		익산		솜리마을
		남원		숲정이마을
		김제		성산지구
			부안	매화풍류마을
	중심시가지형	전주		전주역세권
		군산		海神도시
		정읍		해시태그(#) 역(驛)
		김제		세계축제도시

❍ 추진 중인 사업의 성과 확대와 함께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군지역의 도시재생에 지원 필요

- 사업완료된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도시재생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계획 중이므로 도시재생의 성과 창출과 성과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한 방안 필요
- 주민이나 전문가 등 인적자원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 도시재생 추진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군지역의 지원 필요

2) 도시재생 목표 추구

❍ 도시재생의 목표를 위한 사업유형별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작성

- 사업유형별로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이라는 도시재생 목표를 위한 단위사업 구성
- 근린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의 구성비율이 높음
-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동체 육성이 주요한 목표인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에서는 주거복지와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단위사업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공공기능 회복과 지역의 상권활력의 증진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중심시가지형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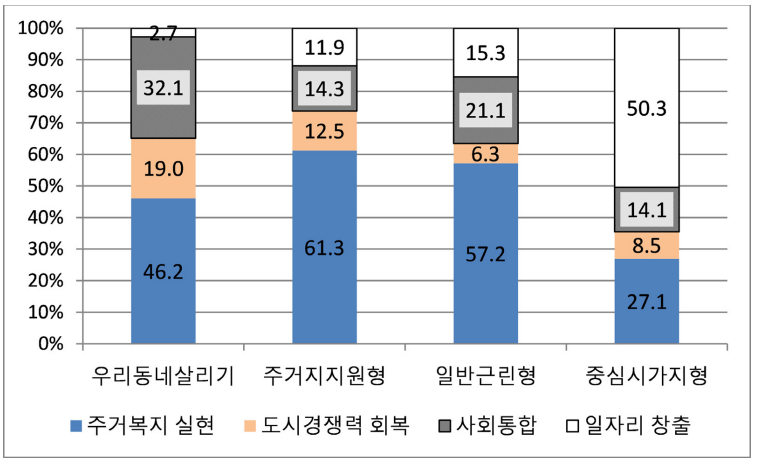

〈그림 3-11〉 사업유형별 단위사업내용 비중

출처 : 오병록(2018) 71쪽

❍ 사업유형별 도시재생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참여주체의 발굴과 지원 필요

- 취약계층 돌봄 등 주거복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 도시재생, 공동체 육성을 통한 사회통합, 주민조직이 경제활동 주체화로 일자리 창출 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참여주체를 발굴하고 지원

2. 도시재생과 연계 가능한 사회적경제 활동

1) 지속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증가

❍ 사회적기업의 인증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이 최근까지 상승 추세를 나타냄

- 사회적기업의 인증 수는 2007년에 1개에서 2018년에 14개로 증가함
-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2016년에 1개에서 2018년에 26개로 많아졌고, 2019년 7월에 이미 전년도의 과반을 넘어섬
-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2013년 1개에서 2018년 18개로 증가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는 수익 모델 발굴 필요

- 전라북도의 활발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도시재생에 참여시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

2) 도시재생 관련 업종 활동

❍ 도시재생의 단위사업에 참여가능한 업종의 사회적기업이 많음

-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분야별 기업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자원과 예술활동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될 수 있음

❍ 사회적목적 실현이라는 사회적기업의 유형에서는 일자리제공형 업체수가 가장 많아 일자리창출이라는 도시재생의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쇠퇴하는 지역의 사회적 재생을 위한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와 연결되는 활동이 많음

- 도시와 농촌의 쇠퇴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에서 확보되는 돌봄공간의 이용주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될 수 있음

- 교육 및 보육환경의 부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역할을 할 수 있음

❍ 도시재생 대상지역의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지역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적 선순환의 주체로서 역할수행이 가능한 마을기업 업종의 비율이 높음

- 전북의 마을기업 중 일반식품과 전통식품 업종의 비율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여 소득창출을 발현할 수 있음

❍ 도시재생사업에 관련 업종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지원 필요

- 사회적기업 꼭두와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도심의 쇠퇴지역 등에서 문화적 재생을 위한 자체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문화예술 업종뿐만 아니라 사회적 재생을 위한 사회서비스 업종, 경제적 재생을 위한 식품제조 업종 등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과 연계되어 주민조직을 육성하거나 직접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 방안 필요

3. 기반 마련 및 사업 지원

1) 지원 조례

❍ 도시재생 지원을 위해 전북도 및 14개 시군 모두 도시재생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주민참여의 권리와 주민협의체 설립과 지원을 명시하고 있고, 전담조직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한 행정적·실무적 지원 규정
-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지원에 필요한 재정의 확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음
- 건축적인 물리적 환경개선에 관한 단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과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규제완화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가 전북도 및 시군에 제정되어 있음

-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등 지원근거가 구축됨
-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는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에 제정되어 있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는 대부분의 시군에 제정되어 있음

❍ 마을에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 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또는 재정 지원의 근거 조항이 추가되어 조례 개정

- 전북도 자체 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사업비용 지원
-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사업의 위탁 등 지원

2) 지원 확대

❍ 전북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 국가 공모와는 별도로 전북도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군산, 장수, 임실에서 추진할 계획임
- 각 사업대상지에서 140억 원, 총 420억 원의 사업비용으로 하여 전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별도의 전북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4년 기간동안 추진할 계획임

❍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인프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해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지원함
-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교체하거나 생산 및 생산품의 운반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에 지원함

❍ 전북도 자체 재생사업 추진, 전문가 지원 및 주민 교육을 통해 역량강화 등 지원사업 추진

- 지속적인 마을관리 등 소규모 도시재생을 위한 자체 재생사업의 공모 추진
- 인적자원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전문가 파견을 지원하고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술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구

4 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 확대 방안

Jeonbuk Institute

1.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향 및 전략
2. 전략별 정책 방안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 확대 방안

제1절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향 및 전략

1. SWOT 분석

1) 강점요인

○ 전북은 다른 도단위 광역지자체에 비해 사회적경제의 활동이 활발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사회적경제 활동의 역량이 높음

○ 도시재생 선도사업(군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도내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음

- 군산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을 통해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인정되고, 선도지역 주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
- 전주의 경우에도 한옥마을 재생을 경험으로 원도심 및 전주역 인근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을 추진 중임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직이 구성되어 행정과 주민의 중간단계에서 지원의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음

2) 약점요인

○ 지역여건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태 및 사회적경제 활동 실태에서 시군간 격차 발생

- 도시재생사업이 시지역에서 주로 시행되고 있고, 군지역에서도 추진 의지는 높으나 지역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여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못함
- 사회적경제 조직 활동에 있어서도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는 많지 않음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연계 미흡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공간사용 주체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 상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고 있지만 주민공동체가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하여 운영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결과 도출에는 어려움 존재

3) 기회요인

❍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그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음

-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에서 모두 5년간 500개소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목표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로 결정하고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정책을 이끌어나가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수행되고 있음

4) 위협요인

❍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지는 않음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행정조직에서 신뢰도가 높지 않음
-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크지 않아 시설관리 업무의 위탁에 제한요소로 작용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이 미흡함

-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시장경제 체제에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SWOT 분석 SO전략(공격) / WO전략(만회) ST전략(우회) / WT전략(방어)		Strength	Weakness
		활발한 사경 조직 활동 도시재생 적극 추진 지원조직 구성·운영	시·군 지역간 발전 격차 도시재생과 사경 연계 미흡
Opportunity	정부 정책적 추진 정부 지원 강화 사회적경제 가치 증가	도시재생 주체로서 사경조직 참여 도시재생에 사경조직 참여 지원 주민공동체 사경조직화	정부지원사업 발굴 미흡지역 사경 업종 개발 지역간 및 도시재생과 사경간 연계
Threat	사회적경제 인식 미흡 사회적경제 경쟁력 미비 민간조직 신뢰도 저조	지원제도 강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민간조직 역량 강화	도시재생과 사경 통합지원 인적교류 네트워크 구축 광역-기초간 협력체계 구축

〈그림 4-1〉 SWOT분석

2. 성과확대 전략

1) SO전략

○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확대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면서 마련된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적극적 참여 유도

○ 도시재생 성과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지원

-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 특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로부터 성장하여 전환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리더와 중간지원조직 구성원, 행정 담당자도 역량 강화 필요

2) WO전략

○ 도시재생 위한 지역여건이 미흡한 마을에서는 마을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을 발굴하여 활용

- 도시재생사업에서 다양한 부처연계사업을 발굴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국가공모로 추진

❍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의 자원을 이용하는 사회적경제 업종의 개발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결과물과 사회적경제를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가치를 연계하여 보다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3) ST전략

❍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제도의 강화

-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와 역량강화 교육
-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구성원에 대한 교육 수행

❍ 사회적경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

- 자생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 될 수 있는 자체적인 수익모델 개발
-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영 전문성 및 경영 마인드 역량 강화

4) WT전략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부문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통합지원으로 상승효과 도출

❍ 인적교류를 통해 지역간 또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전문가 파견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상호 협업

❍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 지역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및 격차 해소에 기여

3. 성과확대 과제

❍ SWOT 분석을 통해 사회적경제가 도시재생에 참여하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들 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함

- 주민공동체를 사회적경제로 조직화하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간 연계가 미흡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업종을 개발하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지원 등을 위해 지원기반 구축
-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사회적경제 업종의 개발, 지역간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 민간조직 역량강화,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도시재생에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통합 지원 등을 위하여 제도의 개선

❍ SWOT분석에 따른 전략을 통하여 지원기반 구축, 지원사업 추진,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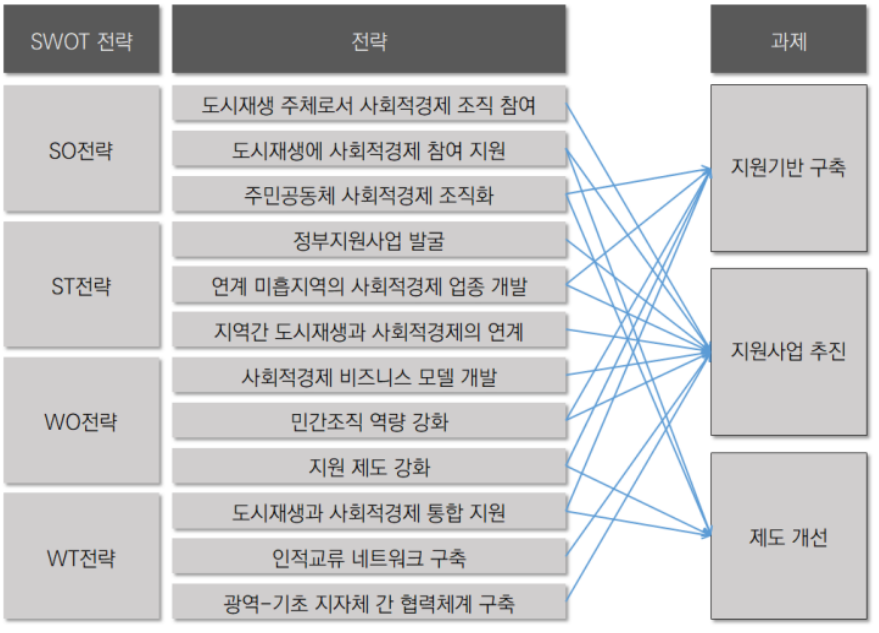

〈그림 4-2〉 SWOT분석과 전략에 따른 과제

❍ 전라북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성과확대를 위하여 도출된 과제에 따라 정책방안을 제안함

❍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설치하고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 설치·지원하며,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 사업,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매칭 지원, 지역 외부 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지원 사업, 공공시설 관리 위탁 사업, 멘토-멘티 연계 전문가 지원 사업, 전북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기술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 지원을 제안

❍ 제도개선 과제에는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건의를 제안

〈표 4-1〉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 성과확대 방안

과제	방안
지원기반 마련	- 전라북도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설치 -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 설치·지원 -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추진	-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 사업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매칭 지원 - 외부 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지원 사업 - 공공시설 관리 위탁 사업 - 멘토-멘티 연계 전문가 지원사업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기술지원센터 설치 -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 지원
제도 개선	-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도시재생법 개정 건의 -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건의

제2절 전략별 정책 방안

1. 지원기반 마련

1) 전라북도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설치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가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로서의 조직 구성 필요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원제도가 정부 부처별로 별도로 나뉘어 집행됨에 따라 행정비용 낭비, 정책의 연계성 미흡, 협업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부처간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자체 간 연계 필요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각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사업시행의 성과를 상호 교차하여 연결시키면 상호보완 가능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 앵커시설의 이용과 운영 및 관리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담당하도록 함
- 두 분야에서 상호간 수요와 성과를 연결시킴으로써 행정 및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결과 도출

(2) 사업 내용

○ 전라북도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설치

- 행정부지사를 협의회장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와 일자리경제본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협의체 조직
- 통합 협의체는 건설교통국의 주택건축과, 일자리경제본부의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 투자금융과로 구성된 행정기관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
-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각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협의회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요구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분야의 현안문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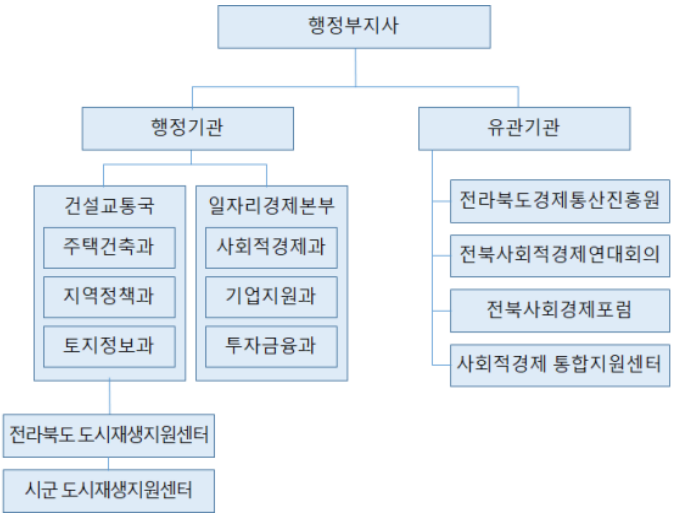

〈그림 4-3〉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구성(안)

❍ 협의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함

❍ 도시재생지역 내 사회적경제 연계 방안 수립

-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공동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되도록 하여 도시재생의 주체로서 지속적인 도시재생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연계 등에 대한 방안 마련
- 전북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위한 지원 방향 제시
- 정부정책과 전북의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 참여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제시

❍ 전라북도 도시재생 및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행정 협의

-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의 운용 및 사용, 참여주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의
-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사업, 지역 외부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참여 인센티브 지원 사업,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매칭 지원 등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협의

2)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 설치·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국가재정으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지원이 종료되면 사업비용 마련의 어려움으로 마을의 자체적인 도시재생이 멈추는 한계 노정

○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마을에서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용 조성 필요

○ 마을관리 등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추진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관리 활동을 위한 사업비 지원 필요

(2) 사업 내용

○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도시재생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 기금의 사업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사업비용의 지원
- 기금의 조성은 전라북도 전입금, 각 시군 부담금, 기금 운영 수익금,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부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함

○ 기금의 주요 출처는 다음의 지원을 위한 용도로 함

-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국가재정 지원사업 종료 후 마을에서 추가적인 필요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용 지원
-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에서 자부담의 일부를 지원(현재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HUG 지원은 상가 리모델링 비용의 70%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리모델링사업자가 자부담)
-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하고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기금의 지원 대상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중 도시재생 성과확대 기여가 기대되는 사회적경제 조직

3)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성공적 도시재생의 결정적 요인인 주민참여 유도와 주민의 역량강화 필요

- 일본 카나자와 시민예술촌이 일본 유일의 주민주체형이고 주민참가형으로 이용되는 문화시설로서 연중무휴, 거의 무료로 창작공간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술가가 유입된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창조계급이 됨으로써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음(정태인 2017)
- 또한,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산업과 역사문화유적 그리고 정책 수립부터 실행까지 시민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임(정태인 2017)

○ 도시재생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간, 행정과 주민 간 등 참여주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상충과 오해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주민의 참여와 갈등은 도시재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올바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적 관계 형성이 중요함

(2) 사업 내용

○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주체의 참여의식 고양과 역량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및 실무능력 배양 프로그램 운영

○ 주민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적 교육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주민참여의 중요성 인식과 참여의 동기부여를 위한 기초 및 이론교육(1단계)
- 주민들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 마을관리와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심화교육(2단계)

-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영능력과 전문기술을 배우는 실무교육(3단계)

〈도시재생 정보체계의 단계적 교육과정 사례〉

•도시마을만들기

주체	세부주제
1. 도시의 이해	도시화와 도시문제 우리 도시의 변화와 미래상
2. 도시만들기	도시만들기의 이해
3.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의 사례 및 시사점 마을보물찾기
4.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주민참여의 이해와 방법론 주민협정과 국내외 사례 지역거버넌스와 주체별 역할
5. 도시특강	도시경관과 디자인 녹색도시의 이해 도시문화의 이해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도시의 마케팅 전략 도시만들기와 지역발전

•도시재생 기초과정

주제	세부주제
1. 지역자립형 도시재생이 무엇일까요?	도시재생의 방향
2. 지역자산을 어떻게 활용하지요?	CB는 이렇게 코디네이터는 이렇게
3. 재생으로 우리 마을이 어떻게 바뀌나요?	생생 녹색마을 만들기 활기찬 상가 만들기

•도시재생 심화과정

주제
도시재생 종합정보시스템 매뉴얼
지방도시 재생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발
도심복합용도 공간재생사업 통합운영시스템 활용법
저탄소 그린도시 구조물 재생 기술
도시환경시스템 녹색재생 기술 개발
재생구역 복합에너지 적용 및 관리기술 개발

출처 : 도시재생 정보체계(www.city.go.kr)

❍ 마을리더 육성과 역량강화 교육

- 많은 마을주민들을 이끌고 사업을 추동해 나갈 구심체로서 마을리더가 무엇보다 중요함
- 마을리더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협조를 구하고 참여시키는 능력 필요
- 마을리더 육성을 위해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 실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

❍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는 행정과 주민 간의 정보교환과 전달, 주민의 요구와 행정적 필요사항 사이에서 적절한 조성,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갈등의 조절 능력 교육 필요
- 또한, 사업의 예산사용에 대한 근거와 절차 등 행정적 업무에 대한에 대한 교육
- 향후 당해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육성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교육 차별화

- 전라북도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모든 도시재생 사업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교육되어지는 도시재생 기초이론교육 등의 도시재생 기초과정을 실시하여 각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의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교육 방지
- 각 시군의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지역의 도시재생 차별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을 실현에 집중

2. 지원사업 추진

1)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 사업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마을관리와 마을사업의 주체로서 도시재생기업에 대한 지원

- 도시재생기업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의 주체로서 기능 수행 필요
-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마을관리와 마을사업으로는 충분한 사업성 확보 어려움

○ 공모 방식을 통해 지역특성 반영 등 우수 사업계획 대상 지원

- 한정된 예산의 유효한 배분을 위해 공모방식으로 지원
- 공모방식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특성 반영과 활발한 주민참여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재생 효과 제고

(2) 사업 내용

○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사업 추진

- 지속적으로 마을의 환경 개선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마을의 관리를 사업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도시재생기업으로서의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우수한 도시재생기업 선정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선정 요건〉

•지역중심 : 주민과 지역의 다양한 주체간 협력을 통한 구성 및 운영
•지역성 : 지역 특성 기반 지역 자원 • 자산 • 자본 활용
•공공성 : 공공 목적의 사업 수익의 공적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
•수익의 지속가능성 : 지역 비즈니스 발굴 • 운영 조직의 지속성 확보 자생적 • 지속가능한 지역 재생

출처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surc.or.kr/crc)

❍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서울시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 만원(자부담 20%)

유형	지원항목	내용
공통	공간조성비	-3년간 최대 2,000만원(1회)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경영·홍보마케팅·회계·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유형	추가지원 항목	내용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인건비	- 최대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사회 보험료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출처 : 손경주(2019)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매칭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간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공간의 상호 매칭 필요

-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도지새생어울림플랫폼이라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에는 마을도서관, 카페, 마을회의실, 다목적공간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구성됨

-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하드웨어 사업인 건축물의 건축은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공간이 운영관리 주체를 찾지 못하고 유휴공간으로 방치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런데, 사회적경제 부문에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지만 활동의 거점으로서 사무공간이나 작업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재생 부문과 사회적경제 부문에 개별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두 부문이 연결됨으로써 상호 보완적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

(2) 사업 내용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정보 매칭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간에 대해 위치, 규모, 형태, 권장용도, 주변 공간의 활용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기업활동의 내용과 특징, 조직구성 및 규모, 소요되는 기업공간 규모 등에 대한 정보의 구축과 공유

❍ 상호 정보의 매칭 제공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공간 유휴화 방지와 주민 필요 서비스의 제공이나 시설 관리의 주체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보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민조직이 발전된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과 일치하는 외부 사회적경제 조직이 도시재생지역에서 활동에 필요한 기업공간 확보 위한 정보의 매칭 제공
- 시스템에 등록된 도시재생 공간과 사회적기업 간 상호 일치하는 소요에 대한 매칭 제공

3) 외부 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지원 사업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마을의 수요에 적합한 업무 또는 능력을 지닌 지역 외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한 마을의 도시재생 효과 제고

-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주민공동체에서 발전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역 외부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이 경우에, 당해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당해 지역의 자생적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도시재생 성과 확대를 위해 외부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지원 필요

(2) 사업 내용

❍ 지역 외부 사회적경제 조직이더라도 도시재생사업 지역에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지역유입을 위해 지원

-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에 조성된 주민이용공간을 주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사회적경제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서비스를 발굴 및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다양한 측면에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 빈집 또는 유휴 건축물 매입 시 재산세 및 취득세 등의 지방세 감면
- 건축물 리모델링 주택도시기금 융자 시 자부담 부분 지원
- 건축물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역 주민공동체 또는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관계 형성 지원

4) 공공시설 관리 위탁 사업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조직에 수익구조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재생 참여 유도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에 임대주택이나 공공주차장, 또는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의 운영을 수탁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이는 다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내 활동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게 됨
- 지역공동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은 지역으로 재투자된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설립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도시재생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공동시설의 관리를 맡음으로써 지역경제의 순환을 가져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창출과 연계되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2) 사업 내용

○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간의 운영관리 위탁

- 도시재생 앵커시설의 운영관리를 맡음으로서 카페나 공방 등을 운영하거나 공연장 등의 공간을 임대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건설되거나 리모델링된 임대주택, 주민들의 공동이용과 지역시설 이용자들의 이용을 위한 마을주차장, 빈점포 등을 상상협력상가로 조성한 임대상가 등의 관리

○ 도시재생사업지역 인근의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리 위탁하여 발생되는 수익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비용에 충당

5) 멘토-멘티 연계 전문가 지원사업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의 핵심의 하나는 주민참여인데, 참여주체는 주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가고, 중간지원 역할을 하며,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갖춰진 역량(manpower)이 중요함

○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간다 하더라도 지역의 활력제고를 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의 절차와 방법 등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역할의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능력에 미흡한 부분은 존재

○ 주민주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대상 역량 교육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전문적 지식 교육 필요

(2) 사업 내용

○ 주민들의 역량강화 위한 교육 전문가 풀 확보

- 지속적인 마을관리를 통해 도시재생 성과의 확대의 기반이 될 주민들 대상으로 마을관리에 필요한 이론적 및 실무적 교육 필요
-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전문가를 섭외하고 전문가풀을 구성
- 전문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필요에 따라 적합한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

○ 마을의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실무분야 전문가 지원

- 전문적인 정보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마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발굴에서부터 마을의 정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동,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발전,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 경영이 필요한 기업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력관리, 예산관리 등 기업경영 마인드 확립과 노하우 교육
- 운영과 경영·홍보마케팅·회계·업무·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6)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기술지원센터 설치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증가에도 자생력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대상 지원 정책은 창업 초기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제품개발이나 기술고도화를 위한 지원에는 미흡함

○ 특히 협동조합은 구성원 공동의 필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므로 설비나 기계 등이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의 투자를 받을 수 없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과 성장 단계에서 한계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의 지원 필요

(2) 사업 내용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시설 지원

-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민공동체로부터 발전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갖는 경제적·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지원
- 전북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을 통한 저비용 소규모 필요시설 설치 지원

○ 전북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기술지원센터 설치

- 고비용 고기술이 필요한 복합·정밀 시설을 갖춘 공간 조성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7)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 지원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경제 조직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인 기업생존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도시재생지역에서 주민공동체로부터 출발된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업무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익 창출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으로 연결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 발굴이 필요함

(2) 사업 내용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 창출 모델 연구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창출을 토대로 지속성 담보 필요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으로서 수익모델 필요
-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에서 도시재생 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구 용역 위탁사업 수행

❍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창출 방안 연구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을 위한 금융조달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고 수익을 감안한 사업분야
- 공공기관 사회서비스의 위탁
- 사업 홍보 및 판로 개척 분야
-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간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제도개선 제안

1)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1) 배경 및 필요성

○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 추진에 필요한 조직 및 행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전담조직 구성·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 등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의 비용에 관한 조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전라북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한 비용에 대한 회수 및 환수만을 담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2) 조례 개정 내용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 설치 조항 신설

○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거나 도지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비용의 재원 마련을 위한 근거조항으로 신설

○ 기금의 사용처는 도시재생기업 운영비, 도시재생사업비 등으로 함

-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사업, 외부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참여 인센티브, 멘토-멘티 전문가 지원사업,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모델 발굴 연구 지원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활용함

-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사업에는 도시재생기업으로서 마을의 관리, 마을정비, 마을의 공동의 복지 등 마을 공동의 수요와 서비스 제공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공간조성, 사업개발, 기술훈련 등의 사업비용을 지원함

- 도시재생사업비 지원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용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함

▌ 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조항 신설

❍ 지자체 및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 도시재생기업이 공공시설을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주민들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에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업경영 수지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면서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임대주택, 공공주차장 등이 대상이 됨

2) 도시재생법 개정 건의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도시재생지역 내의 비어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르게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변경하여야 함

-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임
- 빈집을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방, 작업장, 돌봄소 등 주거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필요하고, 건축물은 새로운 용도의 건축기준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함
- 특히, 주거용도를 문화, 영업, 교육, 복지, 근린시설 용도별 변경 시에는 허가의 받아야 함(건축법 제19조 제2항)

❍ 사회적경제 조직의 도시재생에 참여를 촉진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기준 적용의 완화가 필요

(2) 법률 개정 내용

❍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완화특례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에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 높이,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건축물의 물리적 기준에 한정되어 있음

- 현행 도시재생법 제3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최대한도의 예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주택법」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높이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지역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주민의 이용에 활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도록 함

- 주민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빈집이나 빈점포를 리모델링한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의 용도는 변경신고로 완화 적용

- 건축법의 용도변경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 제32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4항의 시설군간 용도변경은 신고대상으로 한다‘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3)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건의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설립뿐만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각종 부과금 등 세제감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지원, 지정기부금 신청, 경영컨설팅, 창업지원, 판로지원, 특례지원 등의 정부지원이 있음
-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활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일반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는 여건마련이 필요함

❍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의계약에 의한 위탁사업 수행 조건이 유리해짐

-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리목적의 조직이기 보다는 마을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및 도시재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선순환 수익구조 창출을 위한 비영리 조직의 성격이 강함
- 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도시재생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외부의 위탁사업 수행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 필요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8)되어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

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2) 법률 개정 내용

○ 일반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 요건 완화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총회 동의 기준의 완화
- 전환총회 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별도로 다시 개최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성에 대한 불합리의 해소를 위해 전환절차 단계 축소 또는 전차의 간소화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요건 〉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최소기준을 갖출 것
- 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할 것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절차 〉

- 전환준비 및 전환총회에서의 전환결정 : 전환을 주도할 발기인 5인 이상은 전환총회를 준비하며, 기존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전환 가능한 법적 주체인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기존 조직의 업태는 신설 협동조합의 업태와 같은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는지 등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 창립총회에서 전환을 의결할 때는 의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하는데, 만약 기존 조직의 정관 등에 2/3보다 강화된 의결기준이 정해져 있다면(예 : 90% 이상 찬성) 기존 조직의 정관에 따름
- 창립총회 전 준비사항 : 전환총회에서 전환이 결정되면 창립총회 이전까지 지분정리·사채 상환·사회적협동조합 세부유형 결정·설립동의자 모집·정관 및 예산안 마련 등의 준비
- 창립총회 : 창립총회에서는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정관 승인, 사업계획 승인, 임원 선임 등에 관한 의결. 의결 시 조합원 수가 너무 많아 총회 소집 후 2/3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이 힘들 경우 정관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대의원총회로 대체 가능. 정관은 반드시 창립총회의 형식을 통해 승인 필요

☞ 전환신고 및 등기 : 창립총회 후 지분 정리를 완료한 후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같은 과정 이행(전환 신고를 거쳐 이사장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에 이어 등기 완료)

출처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5 장

결 론

Jeonbuk Institute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 종합

1)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과 활성화 정책에 따라 많은 관련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

- 도시재생은 기존의 철거방식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하여 주민들이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참여와 연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목표에 두는 경제활동으로서,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있음

○ 사회적가치 제고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하여 도시재생의 성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성과

○ 도시재생을 통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 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포로 하는 주택 정비, 임대주택 공급, 생활 인프라 개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마을환경 조성, 지역역량 강화, 산업·상업·문화기능의 활성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반면,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구성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는 한계가 있고, 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이 유휴화 되고 국가재정지원 사업 종료 후에 도시재생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는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이라는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 더 큰 의의를 지님

-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 확보와 사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짐으로써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고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3) 전라북도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여건

○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와 근대역사 자산이 풍부하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역량이 우수함

- 전주와 남원의 전통문화와 군산과 익산의 근대역사 자원이 풍부하여 이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추진 여건이 양호함
-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이미 공동체 육성과 활동들이 자체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도시재생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음

○ 전라북도의 사회적기업은 농식품 업종에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협동조합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에서, 마을기업은 일반식품과 전통식품 업종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전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마을의 장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전주에서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완주, 마을기업은 정읍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반적으로 2000년대부터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 농식품, 문화예술, 환경 업종에서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방안

○ 국가의 정책적 지원 속에서 전북에서도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만, 전북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간의 연계는 미흡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이 낮다는 여건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와 지원, 그리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행·재정 지원, 지원사업, 제도 개선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방안을 제시함

- ❍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통한 성과확대를 위해 전라북도 도시재생·사회적경제 통합 협의체 설치, 전라북도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금 설치·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함
- ❍ 지원사업으로서 전라북도 도시재생기업 지원 공모 사업,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매칭 지원, 외부 사회적기업의 도시재생 참여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공공시설 관리 위탁 사업, 멘토-멘티 연계 전문가 지원사업, 전북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 기술지원센터 설치, 사회적경제 조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연구 지원을 제안함
- ❍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도시재생법 및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건의을 통하여 도시재생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제2절 정책 제언

1)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참여주체에 대한 역량강화에 중점

-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이들을 이끌어 나가는 주민들이고 주민공동체 조직임
-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민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인식되어야 함
- ❍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목표는 주민들간 또는 사회적으로 동의된 마을의 공동이익이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실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수반되어야 함
- ❍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행정담당자, 활동가, 전문가 등 모든 참여주체들에 대한 역량강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

2) 사회적경제에 대한 홍보

-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과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사실임
- ❍ 사회적경제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품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선입견에 이용이 저조함
- ❍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이루어져 함
- ❍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공위탁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경제 체제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 및 제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성행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모색되어져야 함

3) 지역주도의 정책 추진

- ❍ 많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전환기를 맞아 도시재생도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음
- ❍ 아직은 도시재생이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예산을 마련하고 역량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
- ❍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에는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참고문헌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19,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

국토교통부, 2017,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성 예시*

김륜희, 2017,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토지주택연구원

김륜희·윤정란, 2017,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김애니, 2017, *창신동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과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구경북연구원, 2015, *대구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박세훈, 2015, "도시재생 동력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운영실태와 과제", *국토*, 제409호, 국토연구원

박세훈 외4, 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국토교통부

서봉만, 2015,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 인천발전연구원

서수정 외1, 2018,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공간과사회*, 제28권 3호, 한국공간환경학회

서울시 보도자료, 2019.5.8., *서울시,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도시재생기업' 3곳 선정 완료*

세종시, 2018,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5개년 계획 연구*

성경륭, 2018,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내생적 지역발전의 기반 구축", *6.13지방선거 사회적경제 정책 토론회* 자료집

손경주, 2019, *도시재생기업의 역할과 사례 : 창신숭인 도시재생 협동조합,* 발표자료

신우진 외4, 2016,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도시정보* No.4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오병록 외1, 2018, *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전북연구원

이경호 외2, 2017, "사회적경제 법·제도 현황과 새로운 법체계 고안", *공익과 인권* 통권 제17호

이석환, 2016, "사회적경제가 결합된 도시재생의 방향", *도시정보* 통권 제410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유리, 2016,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특성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원, 2016,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접점찾기!",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토지주택연구원 공개세미나, 토지주택연구원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임상연 외5, 2015,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장원봉.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2006

전주시. *전주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연구*. 2015

정태인, 2017, *전주시 사회적경제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과 연관하여*

최조순 외2, 2011,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혁할", *도시행정학보* 제24집 제1호, 한국도시행정학회

황영모 외2, 2016,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surc.or.kr/crc)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www.jsocial.kr)

COOP협동조합(www.coop.go.kr)

정책연구 2020-04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성과확대 방안

발 행 인 | 김 선 기

발 행 일 | 2020년 2월 28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285-1 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280-7100 Fax 063-286-9206 www.jthink.kr

비매품/무료
93320
ISBN 978-89-6612-285-1